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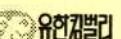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2002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002 여름 기지촌 활동 자료집



| 일시 | 2002. 6. 28 ~ 6. 29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 후원 |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유한봉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우터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2002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2 여름기자춘활동자료집



>> 기획 수기

| 일시 | 2002. 6. 28 ~6. 29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 후원 | 경기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유한킴벌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우터

2002 여름 기자촌 활동
기자촌 활동으로 수우 10주년 기념 기획전 2002

기자촌 활동 기획전 2002



한국여성기자기자연기자회 | 소장 | 85. 6~85. 8 2002 | 서울

한국여성기자기자연기자회 | 소장 | 85. 6~85. 8 2002 | 서울

한국여성기자기자연기자회 | 소장 | 85. 6~85. 8 2002 | 서울



2002 여름 기자촌 활동

자료집 순서 프로그램

>>> 자료집 순서

>>> 기활 학교 프로그램

>>> 기자촌 활동이란 3

기자촌 활동이란

기자촌 활동의 역사

기자촌 활동 일정

기자촌 활동 주의사항

새움터 찾아가기

>>> 새움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 10

>>>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13

>>>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23

>>> 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규정해야하는가? 25

—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 33

>>> 한국 기자촌의 혼혈인 실태와 해결 방안 44

>>>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해설 48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전문 52

>>> 기활 수기 67



총장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축제 축제

여름 축제



2002 여름 기획 축제

기획 축제 프로그램



여름

성매매의 문제점, 실태에 대한 이야기
언니들 만나기, 기획 하기(언니들을 강연자로 섭외)



일정

6월 28일~29일(금, 토 이틀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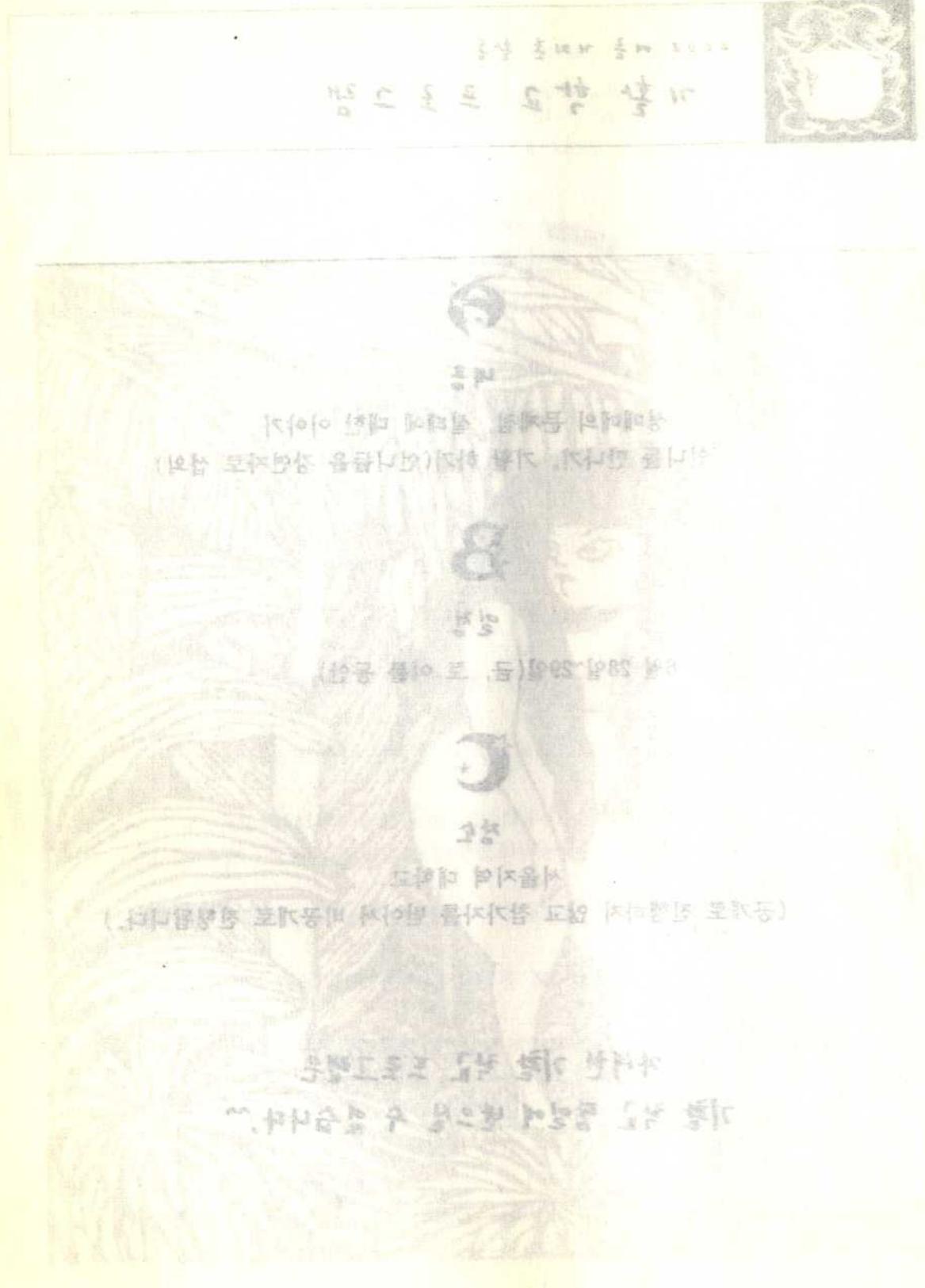


장소

서울지역 대학교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참가자를 받아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자녀한 기획 축제 프로그램은
기획 축제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 여름 기지촌 활동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 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 지역의 문제를 알아가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지촌의 성매매의 문제, 여성문제, 지역문제, 아동문제를 다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모두가 스스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지촌 지역의 생성 배경, 불평등한 한미 관계,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성매매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 제3 세계 여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문제 등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모순들이 복잡하게 얹혀있는 곳이 바로 기지촌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지촌 활동의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순수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애정보다는 막연한 당위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족자주', '여성해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논의에서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개개인의 인권과 일상적인 삶에 스며들어 있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지촌 문제를 '민족'이나 '여성'과 같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틀에 맞춰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은 오히려 주변화되고, 당위적인 '선언'만이 권력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지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차근차근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지촌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한 명의 인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 활동입니다. 작지만 소중하게 맺어진 이러한 관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지촌 문제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화된 억압과 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의 역사

최초의 기지촌 활동은, 1990년 '두레방'을 알고 지내던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참여한 학교는 이화여대와 한신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차츰 기지촌 여성문제가 알려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 의해 자원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으로 기지촌 활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울지역 대학교의 여학생 조직들을 중심으로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체계와 내용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촌 활동이 점점 알려지면서, 1992년에는 서울지역과 수원지역의 여학생 조직들이 각각 의정부, 동두천과 송탄에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4회 기지촌 활동은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기지촌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성매매 지역으로 활동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 쉼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용산)'에서 기지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성매매 문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기지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많은 현장 실무자가 배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94년의 5회 기지촌 활동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1995년의 6회 기지촌 활동은 '동두천 두레방'의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996년, 7회 기지촌 활동은 '의정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 단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감추어져 왔던 기지촌 문제를 보다 공론화시키고, '의정부 두레방'의 경우 지역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운동, 지역내 미군기지 실태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1996년 11월, '두레방' 등에서 활동하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동두천에서 '새움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지촌 현장단체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활동하던 상황에서, '새움터'의 설립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을 통해 배출된 실무자와 타 현장단체에서의 경험을 갖춘 실무자들이 종교, 정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순수한 민간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새움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기지촌 활동 역시 많은 변화가 있게됩니다. 본격적으로 기지촌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됨으로써, 1997년의 기지촌 활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움터'에서 준비한 기지촌 여성 탈성매매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허브(Herb)' 재배 및 판매였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으로 동두천 인근에 약간의 땅을 마련하여 허브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함께 농사를 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지촌 지역의 아동문제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면서, 그 동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온 기지촌 여성의 자녀에 대한 야간 보육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1998년의 9회 기지촌 활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름 기지촌 활동 기간 중에 동두천 지역에 수해가 발생함으로써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해복구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새움터'와 기지촌 활동, 그리고 대학생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8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 직업재활센타의 기지촌 여성 작품 전시회인 '동두천 아리랑'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실시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인하여 기지촌 활동의 준비가 약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 동안 기지촌 활동 경험이 축적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가을 직업재활센타와 아동센타가 새롭게 문을 열게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9년의 여름 기지촌 활동은, 새움터가 또 다시 수해를 겪게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나타났던 기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많은 단위들을 소화해내기 위해 무려 10주간이나 기활을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와 회원들에게 무리가 되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30여개 대학교에서 기활에 참여함으로써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통해 참가한 각 지역 및 단위 주체의 준비 부족과 상호 논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후 평가와 지속적인 연대사업 등 후속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00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99년에 있었던 이정숙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군사주의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다 대중적으로 기지촌 문제를 알려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새움터와 연대 활동을 해왔던 각 대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의 내부 역량을 모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새움터와 함께 활동을 해왔던 단위들이 참가하는 활동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기활이었으며, 대학생들과 새움터 회원들이 서로에 대해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여름 기지촌 활동은, 전여대협과 전학협, 그리고 각 대학 여성운동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기활에 참가했던 각 단위의 정치적 입장은 약간씩 달랐지만, 기지촌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공감대가 보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활을 계기로,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진 단위들이 연대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001년 겨울 기지촌 활동은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

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에 기지촌 활동에 참가했던 단위를 중심으로 '성매매'라는 하나의 주제를 택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움터의 프로그램이 약간 축소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001년 여름 기지촌 활동에 앞서, 새움터는 등두천과 더불어 가장 큰 기지촌 지역인 평택(송탄)에 새로운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부근에 유리방이 밀집되어 있는 성매매 지역에도 센터를 열었고 언니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일시보호소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택 새움터에서는 기활을 진행할 수 있는 공부방,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기지촌 현장활동은 등두천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단위별 교양학교를 평택 새움터에서 진행하였으며, 올해 여름 기활은 등두천과 더불어 평택에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지촌 활동 일정

>> 기간: 2002년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
>> 시간: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에 일정이 끝나면 간단하게 하루 평가를 하고 바로 퇴근하시면 됩니다. 최종 평가는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 장소: 송탄 새움터, 등두천 새움터
>> 인원: 1팀 4명 이내, 총 8팀
>> 참가비: 1팀당 10만원 회비에는 식대, 자료집 등 경비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4명 기준입니다. 단, 하루 기활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회비를 징수한 이후의 잔액은 언니들을 위한 상담비로 사용됩니다.

>> 새움터에서 숙식이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양학교에 참가하는 단위가 기지촌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므로,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위에서는 꼭 교양 학교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의 한 팀당 인원은 최대 4명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saewoomi](http://cafe.daum.net/saewoomi))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에 참가하신 단위는 참가 1주일 전에 확인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촌 활동 주의사항

>> 참가 학생 서로간의 호칭은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언니들에게는 "○○언니",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남학생이라면 "○○누나" 혹은 "○○누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희 실무자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는 편하게 "○○언니"나 "××선배"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동들 앞에서는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좋으며, 아동들에게도 가급적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언니들이나 아이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각자 별명을 지어서 명찰을 만들어 오는 것도 언니들과 아이들이 여러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언니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하지만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 언니들이 대학생에 대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자세로 그 분들을 대한다면 서로의 거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가하는 학생들끼리의 개인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외부로 나가실 때에는 실무자들에게 꼭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중에는 힘들더라도 항상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을 대할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주세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애정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꾸중보다 칭찬과 애정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체벌은 절대 안됩니다.

>> 아이들에게도 가급적 높임말을 써주세요.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도 여러분을 선생님으로서 존중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새움터에서는 실무자, 자원활동가, 기활 참가 대학생 모두 금연입니다. 언니들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실 수 있지만, 기활에 참가하신 분들은 일과가 끝난 후에 언니들이 없는 경우에 실무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담배를 피우시기 바랍니다.

>> 언니들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실무자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니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꼭 말씀해주세요.

>> 언니들과의 돈 거래 및 개인적인 만남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학생과 회원 사이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과 함께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습니다. 새움터는 언니들을 상담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규칙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실한 모습도, 언니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1주 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니 성실한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실무자의 지시에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에 관한 이의나 의견이 있다면, 일과가 끝난 후에 꼭 말씀해 주세요.

>> 기지촌 활동을 마친 후, 회원들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로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후의 상담을 진행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니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아이디어(캐리커처 대자보, 별명 짓기 등)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고 즐거운 첫인상을 심어주며 언니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기지촌 활동의 첫걸음입니다.



새움터 찾아가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카페 cafe.daum.net/saewoomi

e-mail swoom@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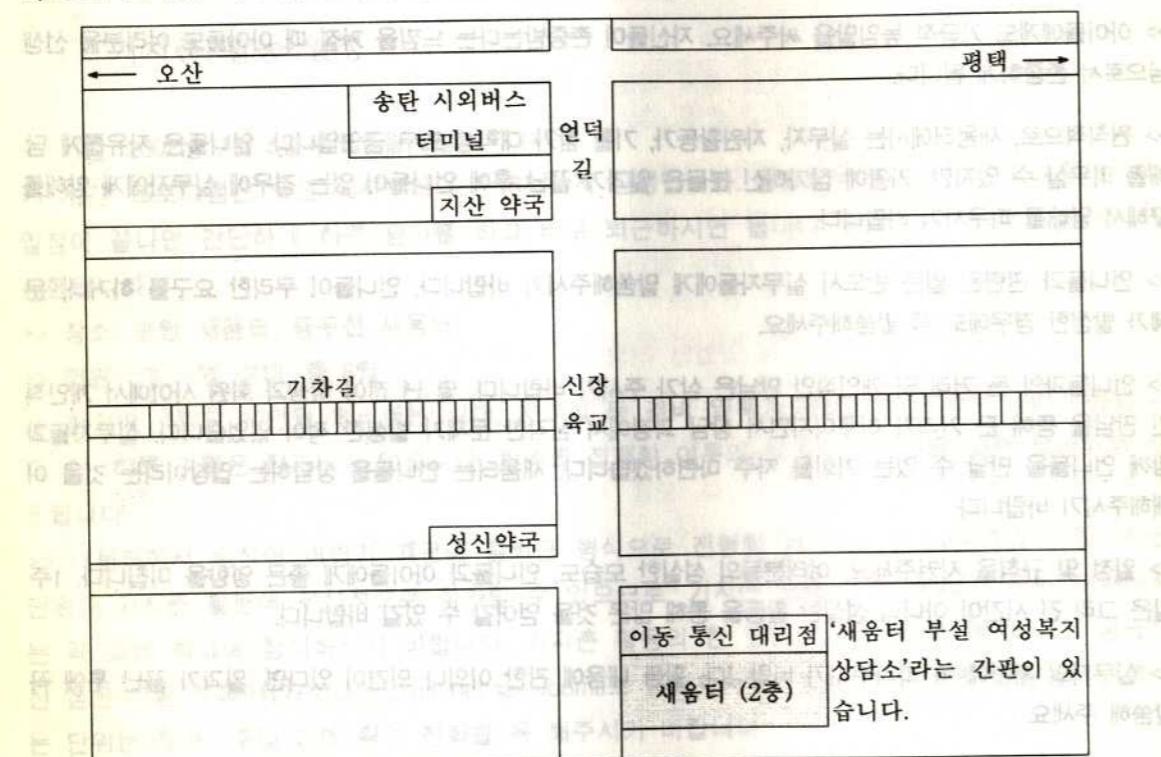
동두천새움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541-39 22동 4반 3층

TEL 031-867-4655 FAX 031-867-3031

송탄 새움터 경기도 평택시 신장2동 274-117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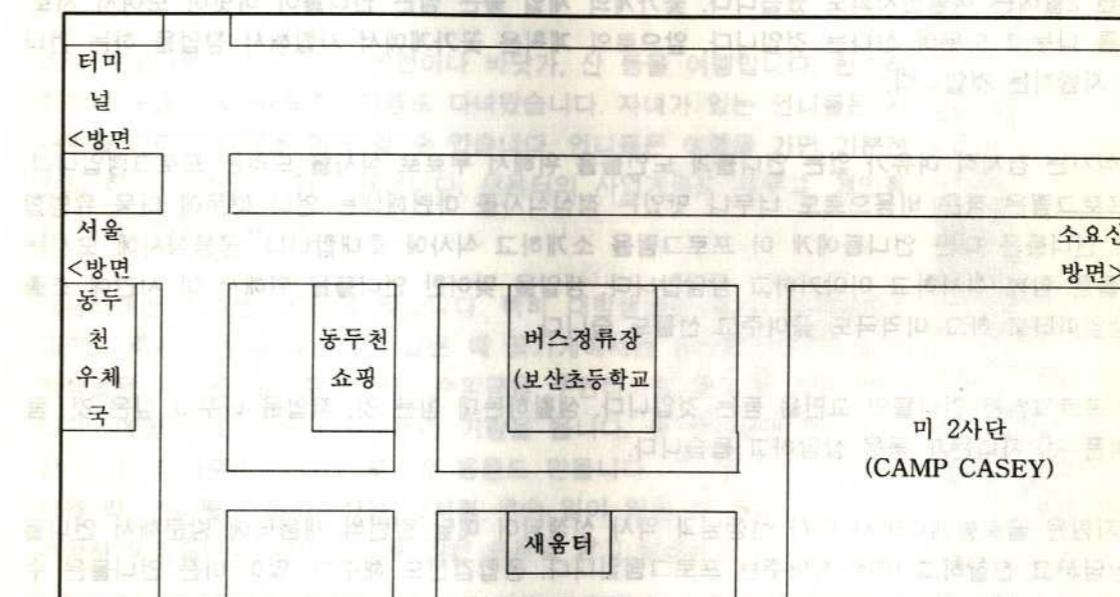
TEL 031-663-4655, 4656 FAX 031-867-4611

>> 송탄 새움터 가기 (서울 남부터미널,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김포공항, 능곡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송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하면 약 1시간~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또는 기차를 타고 평택 역에 내려서 2번 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 동두천 새움터 가기 (동두천은 의정부에서 기차로 약 25분, 버스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기차는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기차는 매시 20분 출발이며,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가는 기차는 매시 50분 출발입니다. 의정부역에서 신탄리 방면 기차를 타셔서 동두천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20분 정도 걸어오시든지 택시를 타고 오셔야 합니다. 갈아타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을 맞추기 힘든 기차보다는 버스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는 36, 136(좌), 39, 139(좌)를 타시면 됩니다. 모두 수유역(4호선) 근처에서 출발하여 쌍문역(4호선), 도봉역(1호선), 도봉산역(1,7호선), 의정부 북부역(1호선) 등을 거쳐 소요산까지 운행합니다. 단, 의정부역 앞으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수유역에서 버스를 타실 경우 동두천까지는 약 1시간 10분 소요되며, 의정부 북부역에서는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보산초등학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동두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마지막 버스는 10시 50분 경에 있습니다. 단, 지하철을 타실 분은 가급적 10시 이전에 동두천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2002 여름 기자촌 활동

새움터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프로그램

새움터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움터 직업재활센터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동두천과 평택에 센터가 있습니다. 동두천 센터는 1996년에 문을 열었고, 평택 센터는 200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동두천과 평택, 군산, 파주, 의정부의 언니들을 돋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언니들도 돋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언니들의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성매매 법을 만드는 것도 언니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새움터에는 “연출”이라는 이름의 꽃가게가 있습니다. 이 꽃가게는 새움터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언니들은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판매합니다. 종이꽃과 핸드폰 고리, 포루리, 카드, 엽서, 악세사리 등을 만듭니다. 이 수익금으로 꽃가게의 언니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1998년 12월과 2001년 2월에는 작품전시회도 했습니다. 꽃가게의 제일 좋은 점은 언니들이 여럿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꽃가게에서 자립해서 창업을 하는 언니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식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언니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식사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으로도 너무나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련해내는 언니 때문에 더욱 유명합니다. 언니들은 다른 언니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식사에 초대합니다. 공동식사에 오시는 언니들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상담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언니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조촐한 생일파티도 하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선물도 줍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언니들의 고민을 듣는 것입니다. 생활하는데 힘든 것, 직업을 바꾸고 싶은 것, 몸이 아픈 것, 자녀문제 등을 상담하고 듭습니다.

의료지원은 글로벌케어에서 의사 선생님과 약사 선생님이 매달 한번씩 새움터에 방문해서 언니들을 상담하고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합검진도 해주고, 많이 아픈 언니들은 수술이나 치료비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항상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을 언니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에서는 업소에서 밀린 월급을 받는 것, 빚을 없애주는 것, 이혼하는 것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언니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군산 화재사건에서 언니들이 감금되어 있었던 방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을 때에는 비리가 있는 공무원과 포주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꽃가게에서 일하던 한 언니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범인을 찾는 유인물을 업소에 들릴 때마다 거리에 있던 언니들이 큰 소리로 응원해주었습니다. 그 언니들은 “왜 아가씨들만 자꾸만 죽느냐? 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범인을 잡지 못하느냐?”라며 답답하고 불안한 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근 언니들이 가장 분개했던 일은 성매매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언니들을 시설에 강제로 입소시키겠다는 의견과 공장제도를 하자는 의견을 말했을 때였습니다. 언니들에게는 어디에서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언니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말도 안 된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언니들은 절대로 이런 의견에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언니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공부방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어머니들을 상담하며, 의료적 지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온천이나 바닷가, 산 등을 여행합니다. 한소리 회에서 도움을 줘서 제주도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자녀가 있는 언니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언니들은 여행을 가면 기분전환도 하고, 미래의 계획도 세웁니다. 새움터의 사업계획도 세우고, 개인적인 미래계획도 세웁니다.

새움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대학교 축제나 월경 페스티벌 같은 때 꽃가게에서는 판매를 나갑니다. 대학생들은 판매를 도와주고 장터 수익금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1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기활을 옵니다. 이 학생들은 언니들과 함께 공동식사준비도 하고 꽃가게 물품도 만듭니다. 이사할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만 하면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여러 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움터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위해서 새움터 직업재활센터 언니들 다섯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글은 전문을 모두 언니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새움터에서는 언니(Si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새움터 종합지원사업

제 10회 복지증명 출판증명 유통증명 제 10회 출판증명
제 10회 복지증명 출판증명 유통증명 제 10회 출판증명
제 10회 복지증명 출판증명 유통증명 제 10회 출판증명
제 10회 복지증명 출판증명 유통증명 제 10회 출판증명

프로그램명	내용
현장지원서비스 (Drop-in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지원 생리대, 의류, 식품 등 ▶ 정보제공 법률정보, 취업정보, 지원체계정보 등 ▶ 의료지원 의료정보제공, 치료위탁 및 치료비지원 등 ▶ 상담 탈성매매상담 ▶ 물품지원 생리대, 의료, 식품 등 ▶ 위기개입상담 문제해결상담, 심리치료상담 등 ▶ 의료지원 종합진단, 치료위탁 및 치료비지원 ▶ 무료법률지원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고소고발 상담, 소송상담 ▶ 주거지원 주거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 서비스연계 쉼터, 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지원기관 등
긴급지원서비스 (crisis intervention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취업정보제공, 직업알선 등 ▶ 취업상담 자신감회복과 표현력 향상을 위한 상담, 면접기술 익히기 등 ▶ 공동작업장 중장기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술교육 취업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조리, 제봉, 컴퓨터, 미용, 운전 등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self-independenc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 ▶ 물품지원
쉼터(shelter)	



2002 여름 기자촌 활동

수요두문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수 행 기 관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지 원 기 관 : 경기도청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연 구 기 간 : 2001년 8월 ~ 12월

연구 책임자 : 강옥경 (새움터 공동대표)

김현선 (새움터 공동대표)

전수경 (동두천 새움터 사무국장)

조사 책임자 : 서윤미 (새움터 연구원)

연 구 원 : 김주영 (평택 새움터 사무국장)

변정애 (새움터 상담원)

주수자 (새움터 상담원)

김정인 (새움터 상담원)

박기영 (자원활동가)

송승훈 (자원활동가)

김광원 (자원활동가)

조 사 원 : 김미현, 김소령, 김승현, 김재욱, 김혜영, 남선은진, 문서연, 박서영,

손이례, 송병규, 신지심, 안병주, 양지연, 이수진, 최노혜경, 최정민,

황김수미, 이지현



연구요약

총괄 주제로 풀어 드립니다.

1. 연구의 중요성

1) 경기도 지역 성매매의 확대

미아리, 천호동 등 서울 지역의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근시안적인 밀어버리기식 단속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성매매 업소들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성매매는 계속 확대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 전국적인 성매매 실태를 유추할 수 있는 지역

경기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군사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다양한 성매매 유형이 혼재되어 있어 전국의 성매매 현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가. 성매매 지역 실태파악

나. 성매매 유형 분석

다.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파악

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연구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① 성매매 관련 정부 간행물 분석

② 인터넷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역의 성매매 실태 자료 수집

③ 성매매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 분석

나. 조사연구

①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연구

지역형태	성매매유형	밀집지역수	조사업소수	조사내용	조사방법
집결 지역	7개 유형 (기지촌, 유리방, 숙박업소, 방석집, 판자집, 맥주·양주집, 보도방)	33개	1442개	·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형태 · 성매매 형태 · 성매매 피해 여성 실태	기지촌 종단연구, 추 이조사, 업소수 및 성매매 피해여성수 전수조사
상업 지역	9개 유형 (노래빠, 다방, 단란/유흥주점, 맥주·양주집,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용업, 전화방, 보도방)	56개	6771개	·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 형태 · 성매매 형태 · 성매매 피해여 성 실태	업소수 전수조사, 성 매매 피해여성수 표 본조사(무작위표본 추출)

② 성매매 비율 연구

5개 업종(다방, 단란/유흥주점, 숙박업, 안마시술소, 이용원)의 총 422개 사례에 대하여, 지역조사에서 작성된 업종별 명단을 총화표본추출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고용여부 및 성매매 알선, 성매매 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성매매 비율을 연구하였다.

③ 경기도 및 전국 성매매 피해여성수 추정치 연구

9개 유형(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안마시술소,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비등록업소, 보도방)의 성매매 피해여성수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기도 및 전국의 성매매 피해여성수를 추정하였다.

④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 연구

17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면접조사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 연구하였다.

3. 경기도 성매매의 현황 및 주요 문제

1) 모든 성매매 유형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장과 같다.

기지촌부터 기업형 성매매 업소까지 경기도는 전국의 모든 성매매 유형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2) 극도로 성매매화된 특정지역들이 있다.

성매매화 정도가 심각한 지역은 광명시, 등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이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성매매 유형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로서, 4개의 집결지역 및 5개의 상업지역이 조사되었으며, 경기도 내에서 성매매 업소수와 피해여성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인구비율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지역은 파주시와 평택시이다. 경기도 대비 성인남성의 비율이 파주시는 2.2%, 평택시는 3.9%인데 반해, 경기도 전체의 성매매 집결지역 중 17.3%가 파주시에, 16.5%가 평택시에 집중되어 있다. 즉, 파주시와 평택시는 해당 지역 내의 성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성구매자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극도로 성매매화된 지역이다.

3)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의 확대 양상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성매매 집결지역에 대하여 경기도는 12개 지역의 620명의 피해여성을, 경기지방경찰청은 6개 지역의 1,322명의 여성을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집결지역은 33개가 발견되었고, 모두 1,442개의 성매매 업소와 7,096명의 피해여성들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집결지역들은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하였다. 피해여성들은 감금, 폭행, 강간, 화대착취, 인신매매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철저하게 상품화·도구화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단속이나 피해여성 지원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미군기지의 주둔은 성매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군기지의 주둔과 성매매 집결지역의 형성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성매매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등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등이다. 미군이 주둔

하는 지역은 성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고, 미군이 축소된 지역에서도 성매매 산업의 악영향은 뿌리깊게 남겨져 있다.

5) 국제적 인신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신매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999년 새움터에서 실시한 경기도 내 기지촌 실태조사와 이번에 실시한 종단연구를 비교해보면, 외국여성을 고용한 업소는 42.7%가 증가하였고,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필리핀 여성수와 러시아 여성수는 각각 11.7%와 151.4%가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6) 신종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성매매 업소가 기업화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들은 수백평 이상의 규모에 수십명 이상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 업주가 여러 유형의 성매매 업소를 동시에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양시 및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의 상업지구에서 조사되었다.

4. 성매매화 비율 및 피해여성 추정치

1) 성매매화 비율

안마시술소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성매매화 비율을 조사하였다. 단, 다방과 이용업의 경우, 성매매 업소와 비성매매 업소가 외관상 뚜렷이 구분되어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총화표본추출을 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성매매화 비율은 단란/유종주점: 100%, 안마시술소 100%, (성매매)이용업 100%, 숙박업 88.6%, (티켓)다방 100%의 결과가 나왔다.

2) 피해여성 추정치

경기도 및 전국의 성매매 피해여성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영업		안마업	관광편의시설업	비등록업소 ⑧	보도방 ⑨	계
	휴게음식점 (다방) ①	일반음식점 (방식점, 맥주·양주) ②	단란/ 유종주점 ③	숙박업 ④	이용업 ⑤					
경기도	4,152 명	3,418 명	58,415 명	9,683 명	1,912 명	2,504 명	1,569 명	3,016 명	34,902 명	119,571 명
전 국	29,369 명	17,802 명	397,380 명	67,139 명	12,174 명	7,398 명	2,425 명	15,708 명	181,781 명	731,176 명

5. 유형별 실태

1)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집결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역 명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수	업소수	여성수
기지촌	동두천시	광암동	1	9
		보산동	1	58
	의정부시	가능2동	1	5
		고산동	1	13
평택시	파주시	선유리	1	4
		신장동	1	56
	수원시	팽성읍	1	27
		소 계	7	172
유리방	광명시	광명동	2	38
	동두천시	생연동	2	48
	부천시	심곡1동	1	31
	성남시	중동	1	112
	수원시	고등동	1	76
		팔달동	1	7
	안양시	호계동	1	11
	이천시	창전동	1	20
	파주시	금촌동	1	21
		대능리	1	64
		연풍리	1	161
여관/여인숙/모텔	평택시	평택동	1	154
		소 계	14	743
	군포시	금정동	1	25
	김포시	북변동	1	15
방석집	부천시	심곡2동	1	60
	성남시	중동	1	85
	수원시	매산동	1	124
	안양시	안양1동	1	88
판자집	소 계	6	397	995
	안성시	인지동	1	41
	소 계	1	41	123
수원시	신풍동/매향동	1	24	48
	소 계	1	24	48
맥주/양주	의정부시	의정부1동	1	27
	이천시	중리동	2	29
	포천군	신읍1리	1	9
	소 계	4	65	123
합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	41
	이천시	중리동	2	64
포천군	신읍1리	1	9	18
	소 계	4	65	123
전국	합계	33	1,442	7,096

① 기지촌

경기도 내 기지촌의 수는 7개이고 등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에 형성되어 있다. 국제적 인신매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군에 의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국인 성구매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② 유리방

경기도 내 유리방 집결지역의 수는 12개이고, 광명시, 등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파주시, 평택시, 이천시에 형성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지역은 파주시로 유리방 집결지역만 3곳이 있으며, 성남시, 파주시, 평택시에는 성매매 업소수가 100개가 넘는 대규모의 집결지역이 있다.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한 업소당 평균 5.7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균 성구매자의 수와 평균 화대 액수를 계산하면, 한 업소당 화대 수입만 월 평균 7,812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외의 슬값까지 생각하면, 성매매 업주들이 얻는 부당 이득은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이 지역의 피해여성들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유리창 안에 앉아 있어야 하고, 감금 및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③ 맥주·양주집 / 방석집 / 판자집

맥주·양주집은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업소들이지만, 특히 농촌지역이나 한국군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성매매 유형이다. 방석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간판은 분식집처럼 “○○스낵”이나 “△△집”으로 걸려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들이다. 판자집 형태의 성매매 업소는 대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골목길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

④ 보도방

성매매 피해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업소와 연결하여 여성들을 알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소이다. 업소들의 주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24시간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업소들은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 피해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신매매도 심각하다.

2) 성매매 업소 상업지역

본 연구에서 성매매 업소 상업지역에 대하여 조사한 성매매 유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노래빠	다방	단란/유흥주점	맥주·양주	여관/여인숙/모텔	이용원	안마·시술소	전화방	합계
업소수	38	675	2,144	856	1,207	217	84	108	5,329

① 노래빠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래빠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빼빼아줌마’, ‘노래도우미’ 등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임시로 고용하거나, 보도방과 연결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호출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접대를 하도록 하며, 성구매자와 동행하여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

② 티켓다방

티켓다방은 주로 상업지구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나 군부대 주변, 버스터미널 주변, 시 외곽 지역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업소마다 2~3명의 여성이 고용되어 있고, 고용된 여성들의 연령대는 20~30대가 대부분이다. 다방은 업소 내에서가 아닌, 대부분 성구매자와 동행하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티켓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소개소를 통해서 유입되면서 소개비와 선불금 때문에 처음부터 빚을 안게 된다. 이러한 빚에 대한 이자 및 방세, 웃값, 쉬는 날에 대한 벌금 등으로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③ 단란/유흥주점

일반적으로 5~10개의 품을 설치해 놓고, 5~10명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의 대규모 업소들은 수백 평의 규모에 20개 이상의 품을 설치해 놓고 50명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업소들은 보도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구매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곧바로 여성들을 호출한다.

이러한 형태의 업소들의 단순 화대만 계산해도 부당 이득의 규모는 엄청나다. 1인당 화대 수입이 한 달에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의 한달 화대 수입은 보통 1억이 넘는다.

피해여성들은 빚의 굴레와 인신매매, 감시,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소개비나 선불금, 선불 방세, 가구 구입비, 웃값 등으로 300~500만원을 빚을 지게 되며, 이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여성들은 업소 내부의 쪽방이나 공동 숙소에서 감금되거나 감시당하고 있고, 혼자 방을 얻고 생활하는 여성들도 동거하는 남자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④ 맥주·양주

맥주·양주집은 같은 상업지역 내에서도 단란/유흥주점에 비해 외진 주택이나 시장 주변 골목 등에 형성되어 있다. 농촌이나 군대 인근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성매매 업소이다.

피해여성들은 주로 1~3명이 고용되어 있다. 업소 내에서는 술을 마시고, 성매매는 성구매자와 동행하여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다. 여성들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이고, 대부분 다른 업소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 유형의 업소로 밀려온 경우가 많다.

⑤ 여관/여인숙/모텔

업소 내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고용하기도 하고, 보도방과 연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며, 인근 유흥/단란주점의 성매매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성구매자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예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도 있다.

숙박업소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면 해당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콜걸’이나 ‘전화발이’라고 부른다. 이 여성들의 연령은 주로 30대이다. 화대는 숙박업소의 업주가 받으며, 절반은 방값과 알선료로 업주가 갖고, 나머지 반은 보도방에 입금해야 한다. 보도방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절반이 여성들의 둑이지만, 이것조차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

⑥ 이용업

건물 외곽에 이발소임을 알리는 이중삼색표시등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업소와 외관상 뚜렷이 구분된다. 성매매 업소임을 숨기기 위해 ‘컷트전문, 염색전문’이라고 적혀져 있기도 하나 내부에 이용기구는 없다. 작은 쪽방과 커렌 등으로 가린 밀실이 업소마다 3~7개가

있으며, 업소 내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피해여성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구매자를 받고 있으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도 많다. 이런 업소에서는 여성들은 중간중간 성구매자가 없는 몇 시간씩 잠을 자면서 고대로 계속 성매매를 해야 한다.

⑦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보통 대규모 업소로서 건물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업소 당 10~20개의 품을 설치해 놓고 10~20명의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 단순히 안마를 받기 원하는 여성 고객들조차 이용할 수 없는 남성 전용 업소이다. 업소 내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지며, 보통 24시간 영업을 한다. 이런 업소에서는 여성들은 중간중간 성구매자가 없는 몇 시간씩 잠을 자면서 고대로 계속 성매매를 해야 한다.

⑧ 전화방

전화방은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

6. 지역별 실태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에 대하여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지도를 작성하였다. 성매매 화된 지역으로 가장 심각한 곳은 수원시로서 4개 유형의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3개 유형의 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은 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이며, 2개 유형의 밀집지역이 형성된 지역은 광명시, 등두천시, 이천시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형 성매매의 형태가 고양시 및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에서 조사되었다.

7.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성과 여성의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고,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간, 폭행, 언어 폭력, 인종 차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이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따라서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이렇게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 상황에 놓여있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주로 15~18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위협이나 폭행, 억압, 유괴, 사기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행위를 분리하는 심리적 경험도 피해여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또한, 업주나 감시인, 폭력배, 성구매자들로부터 피해여성들은 강간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선불금과 소개비로부터 시작되는 빚은 반복되는 성매매의 착취 과정을 통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한 달 화대수입은 천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받는 돈은 거의 없으며, 착취 구조 속에서 빚만 계속 늘어나게 된다. 성매매를 피해 여성들이 도망치면 업주는 사기죄로 고발하고 경찰은 업주를 대신해서 여성들을 수배한다. 피해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업주들은 여성들이 서로 맞보증을 서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피해여성들

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업주와 유착되어 있는 현실은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한다. 평소에 업소 내에서 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을 목격하면서, 피해여성들은 관련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착비리는 피해 여성들이 법률이나 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8. 정책제안

가. 밀집지역에 대한 해결방안

프로그램명	대상자	내 용
성매매 범죄자 처벌 및 교육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 및 성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범죄 조사▶ 성매매 범죄 기소 및 법률 집행▶ 성구매자 처벌▶ 성구매자 교육▶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명단 작성과 신상 공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의료지원▶ 포주로부터의 보호▶ 생계지원▶ 직업적 대안 프로그램 (직업훈련, 기술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응자, 창업지원)▶ 주택지원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범죄의 심각성과 종합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발 및 실행

나. 국가적 해결방안

사업명	내 용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 다양한 성매매 범죄의 규정 및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 및 지원 강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 국제적 인신매매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형태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기소▶ 심각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위원회 및 전담 부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 : 정부 부처 사이의 협력 강화 및 업무 조정, 관련 비정부기구와의 협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상황 파악,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기소와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정기적인 실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국제 인신매매의 경로 차단 및 외교적 협력 강화, 성매매의 피해와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 전담 부서의 설치 : 여성부 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 설치

사업명	내용
성매매 및 인신매매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실태조사 : 성매매와 인신매매 범죄의 유형,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과 상업지역의 현황, 성매매화 지역 현황,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실태, 국제 인신매매의 경로 및 연관 국가 등
시민인식 개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교육 프로그램 :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피해 및 방지 노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 및 군대, 기관 등에서 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 : 상담 및 의료지원, 포주로부터의 보호,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들을 보복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 생계지원, 직업훈련, 기술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신용융자, 창업지원, 주택지원 등
관련 공무원 비리 방지 및 직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공무원 비리 방지 프로그램 : 범죄에 가담하거나 뇌물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방지책 마련 등 ▶ 관련 공무원 직무 교육 프로그램 : 수사 지침 제작 및 배포, 직무교육 등
피해자에 대한 등록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등록 폐지 및 강제적 성병 검진 폐지
성매매 범죄자 명단 작성 및 신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한 명단 작성 및 정기적 신상 공개
성구매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 성매매의 피해에 관한 교육, 경찰 및 성매매 피해여성, 지역 주민 참여, 성구매자가 지불하는 수강료는 탈성매매 지원을 위해 사용

다. 국제적 해결방안

- ▶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명단 교환
- ▶ 성매매 및 인신매매 조사, 기소, 처벌에 대한 협력
- ▶ 성매매 및 인신매매 관련 협약의 이행 정도에 대한 상호 감시



2002 여름 기자총 활동

한국에서 성매매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

이희정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새움터 상담원)

안녕하세요? 저는 새움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희정입니다.

1996년부터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많은 외국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관광나이트 클럽과 미군 주둔 기지촌의 클럽 등에서 춤을 추는 조건으로 공연예술비자(E-6)를 받아서 입국을 합니다. 그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모집하여 데려오는 에이전시들이 여러 곳이 있으며 그들과의 계약체결에서 외국 여성들은 1인당 약 350\$의 월급을 받기로 정합니다.

저는 특히 미군클럽에서 일하는 외국 여성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 여성들의 숙소는 클럽주인들이 정해준 곳에서 한방에 5-6명씩 함께 사용하며 식사는 클럽주인이 식비를 일주일에 1인당 10,000원씩 지불합니다. 저녁 7시부터 춤을 추며 손님들이 들어오면 옆에 앉아서 주스를 마셔야 합니다. 주스 1잔에 10,000원씩이며 이중에서 30%를 여성들이 받습니다. 업주들은 이 여성들에게 한 달에 주스를 200잔 이상 먹기를 강요합니다. 물론 클럽 내에서만 한 달에 200잔 이상 마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은 티켓을 끊어 2차를 나가야 합니다.

티켓을 끊는다는 것은 곧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번 Barfine을 끊는 가격은 시간대마다 달라요. 이른 시간에 끊으면 300\$, 늦은 시간에 끊으면 150\$~200\$에도 된답니다. 이 금액에서도 업주는 70%를 갖고 여성에게는 30%를 주지요. 이 돈은 여성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쥬스 잔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이차를 나가면 주스 몇 잔을 판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국 손님들도 들어오는데 그들은 한국돈 20~25만원씩 지불하고 여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성들은 Barfine을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티켓이 200잔 이하가 되면 업주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 에이전시의 매니저가 한국클럽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 영업시간 이외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감시합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클럽 영업이 끝나면 숙소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낮에는 잠깐 동안 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권도 업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클럽 주인들은 완전히 포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여성의 몸이 아프거나 임신이 되어도 본인의 돈으로 낙태수술도 받아야 하고 약값도 지불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도 빚이 됩니다. 임신한 여성들 중에는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클럽 업주에게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Barfine 을 나갔다 들어온 날은 보드카, 데낄라, 소주 등 독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필리핀 여성들은 미국인과 결혼해서 업소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 미국정부에 의하여 미군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런 기대로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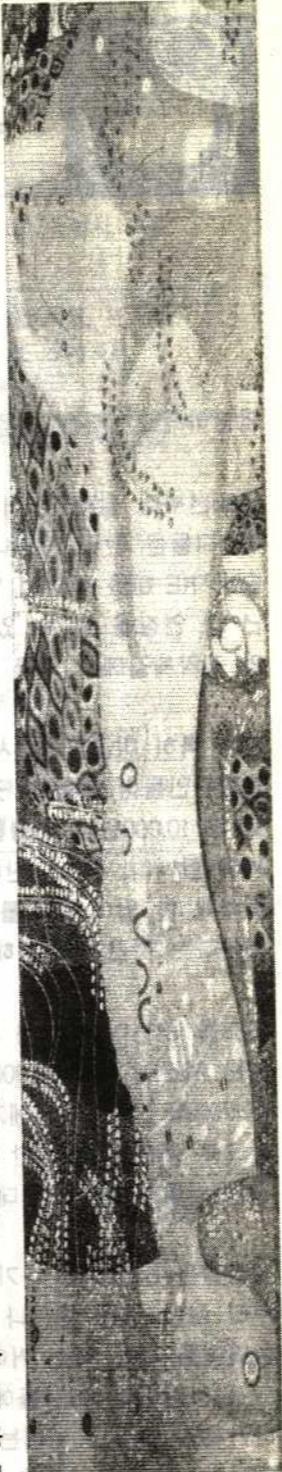
외국여성들은 한국남성들과 Barfine 나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한국남성들은 외국 여성들을 심하게 무시하고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과 Barfine 나갔던 여성들이 호텔에서 도와 달라고 등로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한국남성들은 1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섹스를 원하고, 가지 못하게 잡고, 이상한 행위를 요구하고, 여성들의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정이므로 여성들은 Barfine을 끊어도 호텔에 가기를 싫어하며 손님과 같이 나가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클럽으로 와서 업주에게 돈을 돌려 달라하고 업주는 한번 받은 화대는 돌려주지 않는다면 실랑이를 한답니다. 그러면 다음날 그 여성은 업주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지요.

그래도 미군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Barfine을 3번 이상 거부하거나 한 달에 200잔 이상 주스를 먹지 못하면 해고를 당하고 에이전시 매니저가 한국 클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한국 클럽에서는 손님 전부가 한국 남성들이기 때문에 매일 2차를 나가야 하고 어떤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2차를 나가야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랫도리가 아파서 찔찔 매기도 한답니다.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여성들은 업소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여성들이 도망치면 곧바로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에이전시에서는 도망간 여성들을 찾느라고 공장지대 등 여러 곳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을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국의 외국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 한국정부는 기본적인 인권보호조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새움터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실태조사와 상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여름 기자총 활동

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규정해야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논쟁을 중심으로 -

(최종)원영



여는 글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 배경

한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중심적인 법률은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이후 윤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권 때 '사회악' 해소의 일환으로 출속 제정되어 법조문 자체에 남성 중심주의와 인권 침해 요소가 내포된 법률이다. 비록 1995년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전문(全文)이 개정되긴 했지만, 당시 여성계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사회부 법안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된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며 사문화된 법의 대표적 예로 인식될 정도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1995년 개정 이후에도 이에 대해 여성계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이것이 법 제정 운동으로 본격화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군산

성 매매업소 화재 사건¹⁾이 도화선의 역할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군산 성 매매업소 화재 사건은 성 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노예 매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성매매방지법²⁾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의 공론화는 공창제 찬·반 논쟁으로 전개되는 추세이다. 공창제 찬·반의 이분법적 논의로의 진행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창제 찬성이나 반대나는 성매매가 노동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인가, '윤락 여성'은 성 노동자인가 성 매매 피해 여성인가라는 인식과 규정의 차이와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용어의 차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논쟁 중 여성 인권 보

1) 2000년 9월 19일 오전 9시경 군산의 한 성 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의 여성이 질식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건물의 창문은 전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계단 역시 철문으로 막혀 있어 회생이 더욱 컸다.

2) '성 매매 알선 행위 등 방지법(가안)'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안(案)이다. 비록 여성개발원 안(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성계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이 명칭이 공식적으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법안을 '성 매매 알선 행위 등 방지법'을 줄인 '성매매 방지법'으로 부르겠다.

호에 기반한 두 입장, 공창제 찬성론과 전략적 비범죄화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경에서 서로 다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공창제 찬성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드러내고자 한다.

주요 용어 정리

본문은 현재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는 두 입장, 공창제 찬성론과 전략적 비범죄화론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본문에서 논하는 공창제 찬성론이란 매춘 여성의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현 성 매매 구조에 반대하지만 성매매를 노동의 일부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매춘 여성은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규제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전략적 비범죄화론이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를 인식하여 성 매매 근절을 주장하는 한편, 성 산업 구조에 유입된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여성은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 섹슈얼리티의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본문은 성매매와 매춘 여성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왜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용어의 문제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언급하는 용어들은 신중히 선택된 용어들이다. 성의 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 매매음, 매춘, 매매준, 성 매매 등 다양한데, 각 용어들은 도덕적 판단의 여부, 구조적 문제 가시화의 여부 등에서 미묘한 차이를 지닌다. 본문에서는 도덕적·윤리적 가치 판단을 제거하고 여성의 성이 매매되는 이데올로기, 경제 구조 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성산업 종사 여성은 지칭할 때는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드러내는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용어를 궁극적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상이한 입장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매춘여성으로 언급한다. 단 특정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 그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인용 시에는 원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



공창제 찬성론

공창제 찬성론자들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현재 성매매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노동조건의 문제로 인식한다. 공창제 찬성론자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성매매와 관련하여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 일부가 공창제 찬성론을 지지하면서 공창제의 유효성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공창제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김강자 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 성 매매 단속을 주도하였던 김강자 서장의 공창제 지지 발언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중인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강자 서장은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방법이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다 보니 성매매를 더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성인은 물론 미성년 매춘여성들이 업주들에게 폭행·감

금 등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일이 허다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여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육 배설 장소'를 만들되 이 지역에서는 윤락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 매춘과 미성년 매춘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³⁾

공창제가 매춘 여성들의 인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공창제 찬성론의 입장은 김강자 서장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매춘 합법화를 위한 모임' 운영자(이하 운영자)는 매춘 합법화는 사회적 약자인 윤락녀들이 노동 조합 등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단체 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매춘 합법화를 통해 일반 법적 보호뿐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와 각 사회 단체나 종교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영자 역시 매춘의 합법화는 성매매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며 매춘 합법화 이후에도 장소, 호객 행위 등에 최소의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성매매는 더욱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규제주의'의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⁴⁾

즉 공창제 찬성론은 성매매를 노동의 문제로 인식하며 매춘 여성의 인권 침해는 노동 조건의 문제로 판단한다. 따라서 합법화를 통한 매춘 여성들의 사회적 수용, 노조 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 입장의 모순은 성 매매 합법화와 공창제가 동일한 의미로 혼용된다는 것이다. 명확히 규정하면 현재 논의되는 공창제는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규제주의의 입장이다.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합법화'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공창제 찬성 논리의 내적 모순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들이 매춘 여성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현 사회의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략적 비범죄화론

성매매는 금지하면서 성 매매 알선자와 성을 산 남성만을 처벌해야 한다는 전략적 비범죄화론은 매매준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와 새움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소리회, 새움터는 성매매가 여성계에서도 주변적인 이슈였던 10여년 전부터 매춘 여성,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이들은 매춘여성과의 상담 등 현장 활동 경험을 근거로 매춘 여성의 경험하는 착취는 노동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구조 자체에 기인한 것임을, 성매매 자체가 폭력임을 주장한다. 또한 매춘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성산업 구조에서 무방비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임을 여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입증한다. 이들은 이러한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매춘 여성은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하는 전략적 비범죄화론을 주장한다.

전략적 비범죄화론은 성매매방지법의 모델을 스웨덴의 '여성폭력방지법'에서 찾는다. 스웨덴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어떠한 형태의 성매매이든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금이나 최고 6개월형으로 처벌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성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포주들에게만 해당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성 매매된 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 복지적 관심의 대상이자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성 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의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⁵⁾

성매매 된 여성의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입장은 성매매의 두 주체에서 여성은 제외됨을 의미한다.

3) 『동아일보』, 2001년 6월 12일자.

4) 이는 '매춘 합법화를 위한 모임' 운영자와의 개인적인 이 메일 교류를 통해 얻은 내용과 그 사이트에 게시된 글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5) 한국여성개발원, '성 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미간행, 2001).

다. 흔히 성을 파는 주체를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실상 성을 파는 사람은 그 여성에 대한 소유, 통제 권한이 있는 알선자이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성적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로 매매되는 물품일 뿐이다. 따라서 성을 파는 주체인 포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성을 사는 주체인 남성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해지는 존스 스쿨(John's School)과 같은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성매매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의 원인이 성별 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의 원인이 성별 위계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 구조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상담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성 매매된 여성으로 매춘 여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국가 성책을 맹아도록 요구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강제적 시설 입소에 반대하며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 같은 자유로운 탈성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공장제 찬성론에 대한 반박



성매매가 너무나 일상적인 한국의 성문화, 그 안에서 또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매춘여성에 대한 폭력은 '위기'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창제 찬성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성매매에서 매춘 여성들이 경험하는 물리적·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낙인의 근본적인 기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 물리적·경제적 폭력이 자행되는가.

공창제 찬성론자들은 성 매매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고 매춘 여성들이 범죄자로 인식되는 현재의 법적·제도적 규정으로 인해 매춘 여성들에게 인권 유린이 자행된다고 인식한다. 매춘 여성들에 대한 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임금', '빚'의 문제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성매매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착취는 성매매의 불법적·음성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것을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면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6) 원미혜, 「한국 사회의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97).

여성들은 그 구조에 유입되기를 기피할 것이고 알선자나 구매자들은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성' 이외의 재화와 서비스가 매매되는 것과 '성'이 매매되는 것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착취 외에 매춘 여성들이 경험하는 포주나 구매자로부터의 물리적·언어적 폭력, 성병·에이즈 감염 위험 등이 '산업 재해'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착취는 등 수행 과정 혹은 결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격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거래'가 성립되는 순간 통제력을 상실한다. 매춘 여성은 구매자와의 계약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다.⁷⁾ 남성들이 구매하는 것은 성적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이다.

매춘 여성의 상황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불등과 유사한 것일 뿐이라는 반박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오버올(Overall)의 분석은 성 산업 다른 형태의 여성 노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품화되는 우가 많은 요리, 육아, 보살핌과 같은 여성 노동은 교환이나 상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존재할 있지만, 성매매는 불공평한 교환 관계(성적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돈의 형태뿐 아니라 때로 숙, 의복 또는 사치품의 형태로 제공되곤 한다) 자체로 정의된다. 불공평한 경제적 교환이 없다면 적 교환은 성 노동이 아니라 성적 이벤트이거나 관계일 뿐이다. 즉 성매매에서 본질적인 것은 적 활동 자체가 아니라 성적 행동을 산다는 것이다.⁸⁾ 이처럼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여성 노동과 연속선상이 아니라 성폭력·성 착취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여성’에게 날인이 찍히는가

공창제 찬성론자들은 매춘 여성은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매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춘 여성에 대한 낙인이 범법자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은 매춘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 제공할 뿐이다.

매춘 여성에 대한 비난이 범법자에 대한 비난과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불법 이주 노자에 대한 비난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이 존재하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자민족 중심주의에 근거한, 혹은 그들이 저지르는 절도·강도에 근거한 비판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매춘 성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성격 자체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비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이에 대해 성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에 대해 두 가지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⁹⁾ 현실 간과한 것이다. 가부장적인 성의 이중 규범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반면 여의 섹슈얼리티는 통제한다. 최근 십대 성 매매 파출소장에 대하여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것은 직와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이고 상대 소녀가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갈취해 오 씨가 피해자 측면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파면 취소 판결¹⁰⁾이 내려진 한편, 법무부는 보관찰협의회에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¹¹⁾에 대해 야간 시간대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

같은 글.

Christine Overall, “Evaluating Sex Work,” *SINGS* (1992). 강조는 인용자.

장(윤)필화, 「한국의 성문화」, 『여성/몸/성』 (또하나의문화, 1999).

) 『한겨례』, 2001년 12월 13일자 19면.

) 이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보이지만,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은 실상 성매매를 하는 '십대 여성'을 의미한다.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¹²⁾ 공사영역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적인 행위'라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자신의 신체가 타인에 의해 유린되는 경험을 통해 한 인간이 내면화할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 다른 사회적 자원 접근 기회가 차단된 것이 사소한 일인가. 이에 대해 무엇이 지나친 처벌이란 말인가. 그리고 성 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에 대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은 그리도 쉽게 내려질 수 있을까.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것은 누구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말인가. 남성의 성행위는 비록 그것이 불법적이라도 쉽게 용인되고 오히려 갖가지 구실로 피해자로 재규정된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더욱 철저히 통제된다. 심지어 공적인 절차를 통해.

매춘 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춘 남성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성을 파는 남성이 존재한다 해도 성매매는 성별화된 행위이다. "매춘 여성과 같은 수의 매춘부로 일하는 남성, 남성이 여성을 고용하는 만큼과 같은 비율로 남성을 성 노동자로 고용하는 여성을 상상할 수 있는가." 거의 전적으로 하는 남성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과의 관계이며, 성 노동자에 대한 지배적인 문화적 이미지는 남성에게 봉사하는 여성의 이미지이다.¹³⁾

왜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

성매매의 유형이 다양화·분화되는 상황에서 매춘 여성은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의 행위성을 무시하며 피해자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매춘 여성은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의 행위성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는가, 성별 위계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이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과 다른, 더욱 적극적인 방향에서 성 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지는 여성주의적 함의는 무엇으로 인한, 누구에 대한, 어떠한 '피해'인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캐롤 페йт만은 왜 남성들은 자연적인 성욕의 만족을 위해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공적 접근의 형태를 취하는가를 질문하면서, 성적인 지배권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을 확인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비판한다.¹⁴⁾ 오버을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팔리고 성이 여성의 주요한 자산임을 가르치는 문화에서 강간, 성추행, 성희롱, 근친 상간처럼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성별화되어 있고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의 구성을이며 징후임을 강조한다.¹⁵⁾

즉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이중 규범 등의 이데올로기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구조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성매매를 노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성매매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와 제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하는 지적이다.¹⁶⁾ 따라서 성매매에 있어 동의의 여부, 자발성의 여부는 고려할 요인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성매매와 같은 경우에 여성의 참여한다는 것(참여는 동의를 가정한다고도 주장된다)이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곤 한다. 성매매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것은 '학대의 지불'이 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¹⁷⁾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해진다.

12) 『동아일보』, 2001년 12월 10일.

13) Overall, op cit.

14) 캐롤 페йт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옮김 (이후, 2001).

15) Overall,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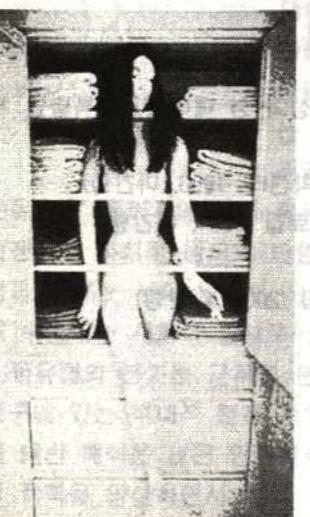
16) 백재희, 「인간 존엄성과 성 매매」, <http://cafe.daum.net/antiprostitution> 자료실.

성 매매 피해라는 것은 '노예 매춘' 등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피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적 구조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성 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매매에 유입된 몇몇 여성이 사회의 눈에 의해 고통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조직화된 관행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모든 여성의 억압하는 사회적 믿음을 영속화하고 증명하는¹⁸⁾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인 것이다.

성매매는 어떤 여성 개인이 '성을 판다'는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어떠한 존재로 간주되는가의 문제이다.¹⁹⁾ 공창제를 도입한다는 것, 여성 섹슈얼리티의 매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여성의 남성 성욕의 배설구로 물상화되는 가치 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공창 지역 내에서 여성들이 경제적·물리적 착취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장된다 해도,²⁰⁾ 공창제의 존재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조직의 구성, 전체 여성의 비인격화의 체계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것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매춘 여성은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 사회 복지 정책을 유도한다는 의외뿐 아니라 성별화된 성적 가치 체계,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 여성의 성 상품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그를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명시화한다는 점에서, 전체 여성 인권의 향상을 한 단계 높이는 혁명적인 전환이 될 것이다.

나오는 글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단순히 호명의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이다. 입장의 차이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구체적 현실에 적용될 때 이는 강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며 현실을 다르게 구성해 낸다. 현재 여성계가 윤락 행위 등 방지법 개정 운동이 아니라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용어의 차이가 가져오는 현실적 파급력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춘'의 주체로 '윤락 여성'과 '그 상대자'를 언급하는 한, 국가가 아무리 '윤락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과 남성 구매자의 처벌에 동의한다 해도 그것은 여성의 성에 대한 매매를 국가적으로 공인한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매춘'을 무엇으로, '윤락 여성'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방시키는, 여성 상품화 현상에 대한 강한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연관된다.

17) K. Barry,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18) Laurie Shrage, "Should feminist oppose prostitution?" *Ethnics*. Vol. 99 (The University of Chicago, January 1989).

19) 백재희, 앞의 글.

20) 사실 한국 현실에서 공창제는 실효성 자체가 회박하다. 현재와 같이 거대한 성 산업 구조를 공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를 규제하고 관리할 막대한 인력과 자원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법화된 성 매매 집단도 단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창제는 잘 규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현실 감각 없는 환상일 뿐이다.

것이다. 물론 성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 역시 매춘 여성으로 언급되는 것과는 다른 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성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이 매매된다는 것의 함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의미와 그것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간과함으로써, 현실을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라는 측면에 주목하지 않은 채 성별적·성 차별적 성매매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도와 상황없이 더욱 악화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매춘 여성은 '성 매매 피해 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 매매 구조 속에서 자행되는 여성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첫 번째 단계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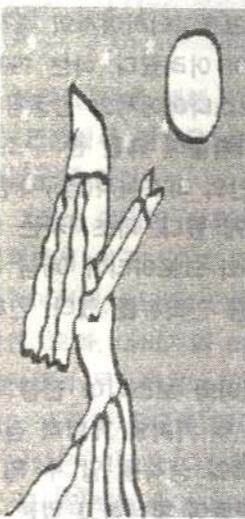
- 박종성, 「권력과 매춘」(인간사랑, 1996).
 캐롤 페йт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유영근 옮김 (이후, 2001).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 아카데미, 1999).
 김미경, 「매춘을 통해서 본 성 통제 구조 일 고찰: 문학 작품 분석을 통하여」(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87).
 박선숙, 「여성의 성성을 중심으로 본 매매춘 정책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90).
 변화순·황정임,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56호 (1999).
 원미혜, 「한국 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 1997).
 이기문, 「위험 수위 이른 매매춘, 공창 제도로 풀자」, 『월간중앙』 (1999년 1월호).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 제31호 (1991).
 장(윤)필화, (1999) 「한국의 성 문화」, 『여성/몸/성』 (또하나의문화, 1999).
 Christine Overall, "Evaluating Sex Work", SINGS (1992).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 「아시아 성 산업 균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 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1, 미간행).
 앤리슨 재거·앤 퍼거슨,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아시아여성학센타, 1996, 미간행).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동아시아의 원조 교제와 청소년 성 매매」 자료집 (2001, 미간행).
 인천여성의전화, 「매매춘 토론회」 자료집 (1995, 미간행).
 한국여성개발원, 「성 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2001, 미간행).
 한국여성민우회, 「매매춘 알선—그 실태와 진단」 (1996, 미간행).
<http://cafe.daum.net/antiprostitution> 자료실
 백재희, 「인간존엄성과 성 매매」.
 변리나·변영주, 「내가 만난 매매춘 여성들」.
 유태희, 「한국 사회에서 매춘 여성의 지위와 인권 문제」.
 이종형, 「공창, 남성 중심이 아닌 대안으로」.
 장화의, 「매매춘 대책, 시급하다—공창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제언」.
 정태석, 「매매춘—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책 필요」.
 Laurie Shrage, 「페미니스트들은 매매춘에 반대해야 하는가」, 윤세정·이윤상 옮김.
<http://maria.peacenet.or.kr>
 신혜수, 「매매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윤영애, 「매춘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 단체의 현실과 전망」.
 전우섭, 「매춘 여성을 위한 정부, 민간 단체의 현실과 발전적 정책 대안」.



2002 여름 기자회 활동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의 평화시/전쟁시의 성별화된 폭력(gendered violence)¹⁾

마리아 올루직 (Maria B. Olujic)



1. 요 약

폭력에 대한 연구(특히 전쟁시의 성적 강제)는 강간이 개별 몸에 대한 전쟁의 필연적인 산물임을 강조한다. 전쟁이 훨씬 뚜렷하게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폭력(특별히 성별화된)을 이해함에 있어, "전쟁시", "평화시(일상)"라고 정의되어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단지 전쟁시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일탈의 형태가 아니다. 그것의 근원은 평화시에 만들어진다. 일상의 상징들(상징적 대화들)이나 은유들은 평화시에 존재하는 권력의 지배와 공격성의 유형을 보여준다. 전쟁시에, 이러한 몸에 대한 상징들과 그것의 부산물들은 공(식)적인 폭력을 합리화하고 해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상징들은 공적 폭력과 글욕을 설명하고 의미와 하기 위해 작동된다. 이 연구는 일상의 권력의 통제와 공격성이 전쟁시에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평화시에 개인의 몸(특별히 몸이 가지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은 일상적인 권리 통제와 공격성의 상징이 된다. 개별 몸의 은유들은 (평화시에 사회 질서의 무의식적 억압을 재현하는) 전쟁시에 의식적 실재가 된다. 개별 몸은 전쟁시에 사회적 몸으로 변형된다(집단 강간이나 인종청소, 혈통의 정화 등). 전쟁 후, 최종적으로 변형과 은유는 사회 안에서 사회를 방향 전환하고 원상복귀한다. 그리고 개인 몸은 다시 한 번 평화시에 수용되는 사회적 질서로써, 권리통제와 공격의 초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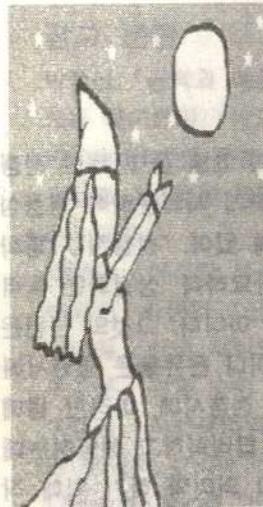
등유럽의 봉고는 군사적 분쟁의 폭발 때문이었다. 1990년에 시작된 전 유고 내전은 확실히 등구와 서구에 있는 적대적 분쟁 지역 중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을 드러낸다. 발칸에서의 새로운 양상의 폭력에 대한 해석은 많은 인류학적 관심을 촉발했다. 냉전의 끝은 2차 대전 이후로 유럽에서 보이지 않았던 폭력을 양산하면서, 오래 지정학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 유고에서의 공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시의 폭력 문화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평화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떨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Desharlans와 Kleinmen은, 문화적 관념이 폭력적 무질서가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될 때는 문제적인 개념이 됨을 지적한다. 연구가들이 사회적 몸과 물리적 몸(구체적인 몸)이 교차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집합적 행위와 연결해야 한다(Desharlans and Kleinmen, 1994). 전 유고에서, 폭력의 동력, 의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관계에 있어서의 폭력과 명예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화된 폭력은 전쟁시 폭력과 구분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의 뿌리는 평화적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전쟁 행위로 성별화된 폭력의 사용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문화를 동시에 연구하지 않고

는 이해할 수 없다. 성별화된 폭력은 사회적 질서에 대한 고란 도구로써 몸, 성, 명예에 대한 문화적 은유를 활용한다. 전쟁 강간을 일탈로써 기술하는 연구자들의 작업과는 다르게, 나의 연구는 전쟁폭력이 이미 존재했던 사회 문화적 역학의 절정임을 보여준다. 정말로 전쟁 강간은, 남/동유럽 지역에서 평화시에 여성의 몸에 부착시킨 명예, 수치심,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없었다면, 여성에게 고통주기와 테러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중앙유럽문화의 보편화된 명예/수치심에 대한 문화적 특징이 없었다면, 테러 정책뿐 아니라 전쟁 강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방법론과 연구 현장



1991년 12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전쟁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는 크로아티아로 갔고, 1993년 5월까지 과학부 소속으로 일했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재직 기간은 매일 매일이 전쟁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대단히 어려웠다. 나는 1993년 여름까지 여성 폭력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로써 보스니아에서의 전쟁강간을 연구했다. 나의 방법론은 희생자-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준 구조적 인터뷰를 포함했다. 인터뷰는 전쟁전과 전쟁 기간 동안의 피조사자(연구대상)의 삶에 관한 인구학적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피조사자는 보건 관리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여/남 피난민들을 포함했다. 이 통계를 위해, 나는 40명의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인류학적 참여관찰과 생애사를 통해 보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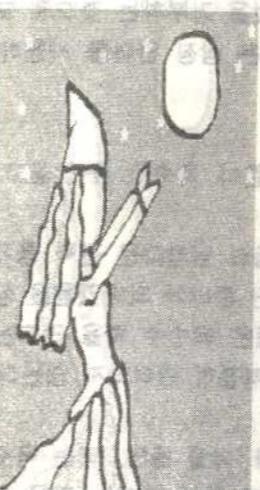
덧붙여 면접 조사(1,060명의 정보 제공자)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전쟁과, 전쟁 강간, 희생자와 가해자에 관한 질문을 포함했다. 두 가지의 개방적 질문은 평화시와 전쟁시의 성적 폭력의 원인에 대한 주체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나의 데이터는 절전 그룹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없는 지역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경(경계)지역의 것이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회교문화는 외형적 차이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그룹의 민속은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지역민속 안에 지속적인 교차점과 장르로 남는다.

나는 처음으로 전쟁과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동시에 나는 내부자이며 외부자였다. 나는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류학자였지만, 나의 조상과 역사는 이 갈등 지역과 연관이 있는 크로아티아인이었고 나에게도 크로아티아인으로서의 기대가 있었다. 덧붙여, 나의 데이터에는 고난의 생존자가 말한 무서운 이미지들과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이 있다.

3. 평화시의 일상적 공격성과 권력통제, 그리고 전쟁

전쟁에서의 폭력의 구현은, 일상 문화에서 성에 부착된 의미들로부터 나온다. 20세기말에 이르러서도, 평화시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는, 남동 유럽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용이한 의미를 만드는 것을 지속한다. 전쟁에서 이성의 명예(정조)에 대한 침해는 한 민족의 남성에 대한 또 다른 민족 남성의 무기가 된다. 이 역할은 남동 유럽에서 슬라브 민족들의 복잡한 전통적인 문화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가부장 체제의 중심은 Zadruga라 불리는 확장된 가족이다.

여성들은 남편의 가족들과 결혼했다. 따라서 그녀들은 성적 대상, 어머니, 노동자로 가치 평가되었던



고,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Zadruga)의 외부자였다. 이러한 설명은 많은 지중해 연안 주민들에게는 친숙하다: 엄격한 위계에 의한 명예와 혈연의 관습은 일상적 규범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Zadruga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지속된 관습은 일상적 규범과 일관성을 규율한다. Zadruga 이데올로기는 현재까지 지속된다.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이성의 처녀성, 순결, 혼인이 최고의 미덕이며, 출산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과, 이에 따른 명예/수치심의 이중 규범이다. 여성에게 있어, 명예와 수치심은 도덕성의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담긴 마을의 병정을 대표한다. 전 유고에서, 성적 습관에 관한 전통적 가치평가는 경제적 변화나 공산주의하의 국가 정책이나, 남성들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유고 전쟁동안,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적 고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도 군사정책의 하나로 성적 폭력을 사용하여 고발된 군 지도층에 대한 전범 재판이 헤이그에서 진행중이다.

성적 강제에 대해 진행되는 조사가, 개별 여성에 대한 범죄로써 강간을 취급하는 것과 다르게, 많은 전쟁에서 강간은 공포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었다. (유태인에 대한 나치의 공포, 중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

그러나 이러한 전쟁에서 강간은, 유고 전쟁에서처럼 대단한 명성을 갖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사회과학에서 연구되지도 않았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의 상황은, 남성들의, 다른 그룹과의 갈등적 맥락에서의, 강간을 연구할 드특한 기회를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강간 행위는 여성뿐만 아니라, 그 남편, 오빠, 아버지와 희생자의 아들에게 글옥을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여자를 보호하지 못한 남자들의 무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글옥은 명예/수치심에 대한 복잡성이 존재하고, 이성의 순결이 가족과 공동체 명예의 핵심이 되는 발칸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남성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한다. 반면에, 여성의 의무는 그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수치심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식적인 인정은 그들의 영혼, 혈통, 명예를 상실한 남자들의 공식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고문으로 인한 고통의 정치적 구성을 관한 연구에서 일리언 스캐어라는, 국가의 물신화된 상징인 고문의 도구가 된 몸(고문을 당한)으로부터의 정치적 의미와 상징적 가능성의 이탈과 이전에 근거하여, 고문의 과정에서의 국가 헤게모니 생성을 정의한다. 푸코처럼, 스캐어리는 국가에 의해 수행된 권력통제의 양식으로써 몸의 다양성을 본다. 세 민족 사이에 공유된 문화적 의미들 때문에, 유고에서의 성적 폭력은 고문의 무기로써 특히 중요하다.

전쟁에서 개인의 몸은 그들 그룹에 대한 사회적 몸의 은유적 재현이 된다. 개인의 몸을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은 그의 국가를 살인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깨끗함이나 더러움의 문화적 관념이 개입한 전쟁 강간은 섹슈얼리티와 민족적 제휴와 연관되었다.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을 통해, 침략자들은 아버지들(침략자인)의 그룹에 속한 민족으로 깨끗한 아이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침범 당한 집단의 피를 정화할 수 있다.

평화시에 성별 상호작용은 노래, 농담과 이야기를 안에 묘사된다. Ganga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민속 노래의 형태는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특정 Ganga의 맥락은 말의 또 다른 뜻을 갖는다 (ploughing(경작하기)은 성교를 의미하고; 덥수룩한 털은 vagina; 총은 페니스 등등).

강가는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그리고 때로는 함께 불려진다. 강가가 남/여 모두에 의해서 불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각 성 모두에게 중요하게 의미되는 장르로 분석될 수 있다. 강가는 또한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과 배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여성을 노래하진 않지만, 그것들의 주요한 초점은 여성이다. 특별히 여성의 섹슈얼리티, 남성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정력과 남성성

에 관한 노래를 한다. 남성들은 섹스를 원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강함에 비해 위선적으로 묘사된다. 강가에서 남성들은 상징 언어를 사용하여, 성적 대상으로써 여성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 사용되는 언어...

“나는 그녀를 (음모를) 면도하고 자른다. 나는 나의 (여인을) 면도하고 자른다. 옥수수 죽이 끓고 있는

여기서, 남성들은 난로 위에서 여성의 음모를 면도하고 지름을 통해 그들의 남성다운 권력 통제를 나타낸다. 난로 위의 여성의 위치는 그들이 성적인 ‘뜨거움’이나 삽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상징 한다. 그 노랫말은 또한 혼합된 옥수수 죽에서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좋은 옥수수 죽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로 세심하게 젓는 것이다. 옥수수 죽이 적절히 요리되지 않는다면, 음식으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손님에게 대접할 수 없다.

많은 민속 음악들은 옥수수 죽 만들기의 과정과 같은 은유를 가기고 있다. 예를 들면,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 같은 일상적 표현은 마치 그들이 옥수수 죽처럼 만족 그룹간에 함께 섞이는 것을 경고 하는 것이다. 유사한 대비로, 같은 표현이 영어 속담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사용된다. 피와 옥수수 죽처럼 걸쭉하고 응고된 상태인 반면에, 여성의 피는 잘못 만들어진 옥수수 죽처럼 끓고 부드럽다. 여성의 피는 결혼을 해서, 그들의 친족을 떠나왔기 때문에 끓고, 반면에 남성의 피는 친족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있고, 자식으로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걸쭉하고 덩어리진 채로 있다. 이것이 왜 말들이 ‘이질적 빼대’나 ‘이질적인 운명’인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피는 옥수수 죽이 아니다’와 ‘피는 물이 아니다’의 관련은 순순한 혈통이 중요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우월한 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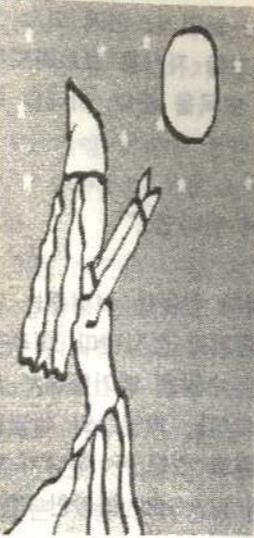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대재앙의 상황에 관한 민요에서 영웅들은 그들의 혈족에게 면지를 썼고, 격조하여 피 눈물을 적셨다. 피는 많은 ‘의례’에서 사용되었는데, ‘결의 형제’의 의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부터, 비탄의 표현으로써 피가 나올 때까지 특정 사람의 얼굴을 할퀴는 것까지 있다. 잘못된 행위는 위법자의 혈족의 일원을 죽이는 피의 응징을 받았다. 덧붙여, 한 가족에서 맨 첫 신부는 ‘나는 나의 피를 너보다 전에 여기에 뿐렸다’는 말로 나중의 신부에게 서열을 주장할 것이다. ‘피 처녀(blood virgins)’에 대한 보증은 그들의 결혼식 밤에 피를 흘림으로써 믿게 된다.

앞서 인용문에서 음모의 면도와 자르는 이미지는 유사하게 복잡한 상징적 예이다. 남성 제공자는 그 인용문을 ‘남성은 그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했다. ‘그는 그가 병아리가 아니라 사내다운 놈임을 다른 남자에게 자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면도와 ‘cut’이라는 단어는 현재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기관총의 불꽃이 적을 면도(shave)한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털을 면도하는 것은 (특히 여성의 털) 또한 정조를 더럽힘에 대한 탄식으로 사용되었다. 2차 대전 동안에 게릴라들은 여자가 스파이라면 그녀의 머리를 면도했다.

결론적으로 면도하는 것은 소년의 머리 자르기 의식의 중요성 때문에, 회교도 지역에서 남성이 되는 나이와 할례 의식과 연관된다. 모든 것에서 cutting 과 shaving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내포하며, 특히 성적 권력을 상징한다.

4. 섹슈얼리티, 구흔, 재생산

비록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유럽 문화에서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조크, 노래, 격언과 기타 민요 등 통해 여/남에 대한 광범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볼 수 있다. 강가에서 은유적 언어로 섹슈



얼리티에 대한 논의가 사용되듯이, 성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다른 민요에서 여성의 성적이고 성직자들이 육정적이라는 아이디어들이 표현된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성적인 힘과, 강함이고 자랑스러움이다.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여성의 성적 통제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전쟁 강간을 글목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다.

남성 인터뷰자의 생애사는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몫두를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인터뷰는 그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와 서로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공연하고, 다양한 사내다움과 성적 응감함에 대한 전시에서 보여진다.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그들의 남성다움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 서로서로 상상 속에서와 실제의 성적 사건들을 자랑한다. 다른 세대의 남성 피조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적 게임”을 가지고 있다. 10대들은 소를 치는 동안에 숲에서 놀면서, 그룹으로 모였을 때 누가 더 오줌을 멀리 보내는지 보기 위해 경쟁한다.

또한 누가 더 긴 페니스를 가졌는지 경쟁한다. “지배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평가 기술을 고안한다”고 피조사자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 사이의 간격, 손가락의 두께와 넓이, 엄지손가락의 길이 또는 손바닥의 넓이 등. 남자 인터뷰 대상자를 중 이러한 행위를 공격적인 것으로써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단지 그들 중 누가 가장 신체적으로 우월한가를 보여주는 게임으로써의 경쟁으로 본다.

“우리는 모두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요일에는 일상의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물론 우리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도 알았고, 여자들이 옷을 입는데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았다. 이것은 여의 기회였다. 다른 방법은 여자가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 아래에서 치마 밑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 여자가 서있거나 어떤 노동을 할 때 마루에 유리 조각을 놓는 것이다.”

평가의 척도는 또한 여성의 성적인 경험을 평가하는데서 나타난다. 남자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을 나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만일 처녀라면 여자는 잠자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순결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은 그녀의 가슴이다. 그녀가 부드러운 가슴을 가졌다며, 다른 말로 “늘어짐 hanging”이라면, 그것은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뜯쓰게 만들었다(상처를 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방식은 그녀의 오줌 누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녀가 오줌을 넓게 싼다면, 그녀는 처녀다 (Pearced)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과 상징 또는 강간 놀이는 역사적으로 남유럽에서 몇몇 결혼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과거에 납치에 의한 결혼은 여성이나 그녀의 남성 혈족의 등의 없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납치”는 그녀 부모의 찬성 없이 젊은 커플이 결혼을 허락 받기 위한 도망의 형태가 되었다. 이 주제는 또한 “Chasing”이라고 불리는 구애의 형태 안에서도 작용한다. 그것은 2차 대전 후에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10대였던 젊은이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들은 여자를 쫓아가서, 그녀를 넘어뜨리고 그녀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녀를 마루 위에 눕히고, 그녀를 굴린 다음에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음모를 잡아당긴다. 만약에 그것이 많은 다른 남자들이 있는데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반면에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 남자를 희생자로부터 떨어뜨린다. 나는 여자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들었는데, 남자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종종 공격당한 여성은 그 남자가 더 진전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했다. 강간 행위, 이것은 공식적으로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이다.

역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젊은 남자의 관심을 끌었다면, 그녀의 명예는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녀의 모든 가족의 명예에 상처를 주게 된다. 어린 소녀들은 종종 공공연하게 그들 자신을 보호하도록 얘기된다. 예를 들면, 엄마들은 불장난을 할 것 같은 딸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모욕을 준다. 아래의 예들이 냉정해지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네가 욕정이 생긴다면, 짙게 발이나 주걱을 달구어서 너에게 대라, 네가 불에 탄다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불신은 또한 결혼에 있어 처녀성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식 후에, 첫날밤에 시트에 묻는 혈흔은 전통적으로 처녀성에 대한 증거로 전시된다. 이러한 관습은 여성이 등을 피를 사용한다든지, 빨간 페인트를 묻힌다든지 하는 등의 수많은 얘기들에서 묘사된다.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우스개 소리가 있다. 밖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녀는 페인트의 색깔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도 시트에 녹색을 뿐였다. 이른 아침에 걷고 있던 두 수녀가 맨 처음에 널려있는 이 시트를 보았다. 한 수녀가 다른 수녀에게 말을 했다. “Oh, My God! 불쌍한 여인 이여, 이 남자는 방광의 부레(답즙)에 삽입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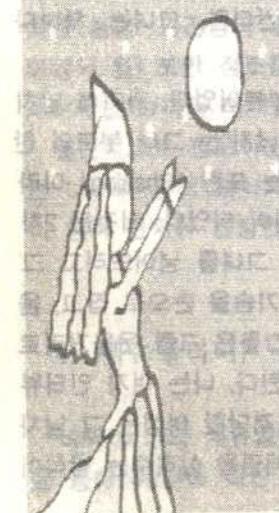
그러나 처녀의 피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면, 월경혈은 더러운 피로 얘기된다. 만약 기형아가 태어난다면(납작한 성기를 가진), 그것은 여자보다 더러운 피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된다.

중요성과 가치는 여성의 순결성, 일부일처제, 재생산에 주어진다. 그것은 현재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에서 왜 여성의 친척과 혈족에 의해 비판의 표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공격과 폭력은 전통적인 명예, 수치심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정치적인 과정과, 재산에 대한 통제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 방식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명예가 남성의 명예이며, 곧 국가의 명예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5.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 혹은 문화 (전쟁시의 경우)

공포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미리 계획된 1990년 여름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공포의 전술에서 시작된 이벤트의 연속이었다. 즉 거리의 바리케이드, 마을과 시민들 머리 위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유고슬라비아 민중군(軍) 헬리콥터와 폭탄들, 대학살과 절정에 달한 전투과정에서 개인들에게 행해진 체포와 고문들은 이미 공포의 전주곡이었다.

1990~1991년 사이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공통적 형태의 테러는 소수민들(Minority citizens)을 선별하고 검거하는 것이었다. 개인들은 그들이 지역 경찰이나 혹은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잡혀가지 않기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한 대화”에 의지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살해되었다. 1991년 여름 끝에는 탱크, 대포, 폭탄, 미사일로 중무장한 포병대와 함께 암살이 시작되었다. 1992년 봄, 전쟁은 더욱 잔인해졌고 그러한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전투상황이 그러하다. Ganga 민요는 크로아티아 국경지대에서 불려진 전형적인 경우다. 전쟁 초반부터 농담과 같이 강가 민요는 대중적으로 널리 불려졌다.



(1) 내 작은 아가, 엄마의 사랑스러운 아가야,
빨리, 폭격기가 있는 내 밑으로 숨으렴 어서.

(2) 만일 하늘의 모든 별들이 부드러운 털(pussies, 여성의 음부)이라면,
남자들은 모두 비행사가 될 꺼야.

이는 성적인 내용, 특히 폭력적인 공격을 성적인 행동으로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보스니아에서 전쟁 전야에, 크로아티아에서는 이러한 농담이 맹렬히 퍼져나갔다. 이 농담은 (이후 발생할)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불안을 드러낸다. 전투가 반발하기 전, 다음과 같은 농담이 대중화되었다. ‘하소(Haso)가 그의 아내 파타(Fata)에게 말했다. “탱크가 보스니아로 몰려오고 있으니, 그들을 막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가 길바닥에 드러누워야지!” 그랬더니 파타가 대답하기를 “아뇨, 나는 보병을 기다리고 있는 걸요.”’ 하소가 파타에게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하여 탱크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이고, 그녀의 대답은 보병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담은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병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섹슈얼리티가 병사의 무기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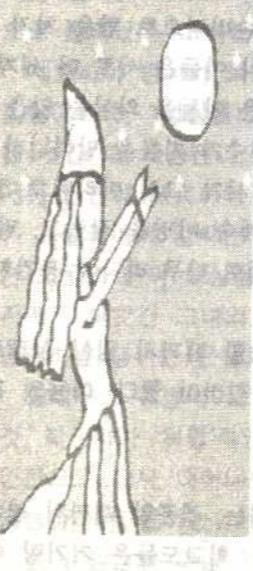
다음의 두 번째 농담은, 전쟁하에서 강간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알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파타에게 하소가 “무슨 일이 있었나?”고 물으니까 파타는 “저격수가 나를 가졌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농담은 성적, 호전적인 이미지와 신체적 상징적인 경험으로서 강간의 심각성을 부화시켜 버린다. 이러한 농담에서 여성은, 원래 그녀들을 소유한 남성들과 그 남성의 적군 모두에게 군사적, 정치적 표적의 매개물로서 묘사된다.

6. 前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 강간

前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강간과 성적인 고문의 희생자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2년 9월말에 보스니아 정부에 의해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15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대략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분리 수용되었다. 남녀 모두 이 캠프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여겨지며, 그 고문에는 강간과 성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고문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그들의 여자 친척들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만 했다. 같은 보고서는 최소한 14,000명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고 보고한다. 이중 2,000명은 7~10세의 소녀들이며, 18~35세가 8,000명, 35~50세가 3,000명, 50세 이상이 1,000명이다.

1992년 유럽 공동체(EC)의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보스니아-세르비아 병사들은 20,000명의 여성들(주로 회교도들)을 강간했다고 한다. 강간은 전쟁 중 공격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이며 의도적인 학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쟁 강간은 “인종 청소”的 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보스니아 내무부는 강간 피해자를 50,000명으로 잡고 있다. 보고된 강간 케이스들은 다양해서, 강간이 인종 말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에서 발생한 수많은 대량 강간은 보스니아 정부가 “강간 캠프”라고 명명한 곳에서 발생했는데, 정복된 여성들은 세르비아 병사에 의해 강제로 불집힌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많은 여성들이 두 가지 잔인한 운명 앞에 직면해야만 했는데, 살아남기 위해 강간과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



하거나 즉각 살해되거나 들 중의 하나였다. 강간 캠프의 이름과 장소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구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으나, 새로운 상황은 잔인했다. 강간 캠프는 종종 전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의 상황과 같았다. 강간 캠프의 이름은 전통과 현대를 모두 상징했다. '요정의 긴 머리'같은 이름이나 '커피하우스 쏘나'같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예전에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이런 이름들을 전통적이고 고풍스러운 시적인 거리를 상징하는 휴식, 즐거움을 상징했다. 그러나 분명하게, 최근 이들 캠프의 의미는 쉬는 장소라기보다는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해소하려는 여성들의 사창가가 되었다. 캠프 이름이 갖는 상징은 캠프의 강제적인 성격을 은폐시키고, 여성 스스로가 그런 희생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은 레이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같은 영어식 캠프 이름이 현대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름은 서구의 성적인 난잡함, 방임주의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캠프는, 세르비아 남자가 처벌받지 않고 어떠한 종류의 성적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성적 학대의 면허증을 제공했다. 여성들에게는 이곳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이었다. 많은 캠프에서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은 권총으로, 윤간 후 과다 출혈로, 혹은 수치심에 택한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강간이 회교도 병사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병사에 의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들은 "미리 계획된 강간 캠프와 여성들은 그들이 임신할 때까지는 감금하지 않은" 개인적 사례일 뿐이라고 한 남성 응답자가 말했다.

잔학 행위들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몇몇 세르비아 병사들은 그들의 상관으로부터 임무를 명령받은 증거가 있다. 정치적 수단으로서 고의로 강간하는 것은, 여성에게 고의적으로 임신시키는 인종 강간(다른 인종의 여성에게 강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게는 6세부터 많게는 80세에 이르는 여성에게 강간한 것이다.

남자 가족들 앞에서 여성 강간하려는 시도는 강간이 모멸, 수치심으로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비록 강간과 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남성 죄수들에게 서로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형제간 부자간의 오랄 섹스와 같은 강요된 성적 잔학 행위에 관한 기록도 있다. 좀 더 흔한 경우로는 남성 친척간에 서로를 고문하게 하는 예들이 있다. 다음은 회교도 남성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다.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세르비아 병사들) 우리(죄수들)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우리들 중에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 병사가 "서로 때리고 싸워라."고 말했고 그들은 서로 손바닥으로 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병사가 "아직 멀었어. 피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병사들은 아들을 의식을 잊을 정 다시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 피가 안 나잖아. 이렇게 해봐" 그러더니 병사들은 아들을 의식을 잊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죄수 중의 한 사람을 불러 "니 이름이 뭐냐?"고 묻고 죄수가 이름을 말하니까 그고 나서 아무렇게나 죄수 중의 한 사람을 불러 "니 이름이 뭐냐?"고 묻고 죄수가 이름을 말하니까 그이야. 니 에미 fucker. 여기서 죽어봐.(자살해봐)"라고 말했어요. 다섯 명의 병사가 그의 머리위로 점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의 귀를 잘랐어요... 그는 계속 비명을 질렀고, 피가 사람 위에 올라타서 웃고 즐겼어요... 거기 있던 우리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나무 바닥에 흥건한

여성에게는 불임 수술을 시도하거나 그들을 죄수 신분으로 낙태가 불가능할 때까지 임신 상태로 붙잡아 두었다. 강간당한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은 계속 폭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 다음의 긴 인용문은 19세의 여성 '사넬라(가명)'로부터 들은 것이다.

네 명의 세르비아 병사가 내게 물었어요. 남자가 있었던 적이 있나고요. 나는, 결혼할 때까지 연애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병사들이 말하기를, "너는 회교도가 아니라 스파이다. 회교도들은 거기랑 아래

"엄마와 나이든 여성들은 그랬지만, 그것은 관습의 일부일 뿐이고 젊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고 강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더니 한 병사가 나를 붙잡아 내팽개치더니 아래를 벗기고 음모를 보더니 "봐라. 너는 회교도가 아니지. 니가 회교도라면 음모가 없어야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는 회교도가 아니다. 니가 누군지 밝혀라." "나는 회교도입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 어머니에게 맹세합니다. 회교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넌 회교도가 아니야." "예, 저는 회교도입니다."라는 식의 대화가 계속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칼을 꺼내더니 나에게 던지고 난 후 나를 마루바닥에 눕혀 고정시키더니 도와달라며 다른 병사를 불렀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면서 "밀어버려(면도해 버려)!" "잘라버려"라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은 면도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털을 뽑고 칼로 내 몸을 가로지르고...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두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한 사람이 내 위에 올라타고 내 다리를 올려서 나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두꺼운 천을 내 입에 쑤셔 넣고 내가 소리치지 못하게 한 다음, 언제나 와서 내 털을 뽑았어요. 내 몸을 꽉 잡아당기고 나서, 나를 발로 차면서 더 세게 털을 뽑는 거예요. 후에 내가 본 것은 붉게 피멍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내 몸이었어요... 매일 밤 그랬어요...

네 명의 세르비아 "영웅적인 병사"에 의해 자행된 고문의 자세한 묘사는 계속된다. 칼로 그녀의 유방을 그었고, 그들은 (그녀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일어나서 빙빙 돌고, 앉아라, 일어나라, 누워라,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면서 처음에 자상을 입었을 때 피가 멈출 수 있게 지혈할 것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중거야. 너는 그걸 느낄 거야. 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자, 이제" 그 병사가 말했다. "너는 음모가 고도야. 이제 진정한/완전한... 그리고 너는 내가 그렇게 할거라는 걸 잘 알지?" 나는 그들의 위협에 벌천히 잘려졌어요. 그래서 진정 피가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어떤지, 얼마나 느끼는지...

사넬라는 같은 날 모든 남자에게 당한 더 심한 고문과 구타. 오랄 섹스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강제로 웃이 벗겨진 채로 차디찬 나뭇가지 위에 뉘여 졌고 네 명의 병사들에게 차례로 강간당했다. 그 중 한 병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잔말 말고 누워. 입 닥쳐! 그래서 너 정말 남자랑 자본 적 없어? 있다고? 음, 이제 넌 남자,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게 될 꺼야" 그리고 안 벗겨진 네 것...(회교도의 할례 의식과 관련된 말)" 사넬라는 고문과 강간 후에도 살아남았고 죄수 교환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임신 능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크로아티아의 망명자 캠프에서 살고 있다.

세르비아 병사가 회교도 피해자에게 한 할례에 대한 언급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할례했다'라는 말 대신에 그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좀 더 훈하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된다. 이 말의 함의는 회교도들의 패닉스는 기형적이며, 불완전하다고, 손상되고, 거세된 반면에 세르비아 병사의 성기는 완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세르비아 병사의 잔인한 조종은 그가 사넬라에게 임박한 강간이 학대 행위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모욕을 통해, 그는 고문의 진짜 대상을 분명히 했다. 그의 고문 대상은 사넬라가 아니라, 자기 여자의 순결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그녀의 약혼자 남성이다. 사넬라의 설명은 Ganga 노래를 상기시킨다. 여기서 자르고 면도하는 행위는 은유가 아니라 실제가 된다.

클라우스 케벨라이트에 따르면, 고문의 효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희생자를 파괴하는 것, 희생자가 '위협'적인 존재로 구형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문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피해자)이 죽음으로써 가능하다. 고문하는 사람은 고문당하는 사람의 몸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몸을 얻는다.

몸이 남성의 여성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각 인종들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병사가 사넬라의 몸을 전형적인 회고도로 만들기 위해 “자르고 면도하고”하는 증언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그녀의 육체에 “인종성(Ethnicity)”을 각인했다. 인종성의 각인은, 사람들이 다른 인종과 다른 피를 가졌다고 믿는 영역의 긴장과 관련이 있는데, 그 다음은 신체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다. 여기서 여성들은 암묵적으로 불임이 되거나 다른 민족의 멍청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공포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항상 침략자의 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7. 전쟁 문화의 변형

강간의 정치적 이용은 전쟁의 진행과 궤를 같이 한다. 1991년 크로아티아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이 처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그 사안 전반에 대해 침묵했다. 1992년 봄, 나는 크로아티아 병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크로아티아 윤리위원회에서 임신한 크로아티아 여성과 너무 늦어 태아를 낙태할 수 없는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가 말해 준 이 정보는 “일급비밀”로서 언론에도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을 때도, 아니 사태가 더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첫째는 크로아티아의 크리스찬 여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문제 발생 만큼이나 간단하지 않다. 크로아티아 여성들이 당한 전쟁 강간에 대한 침묵하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크로아티아 남성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스니아에서 크로아티아 여성, 회고도 여성 모두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보다 보스니아에서 일어난 전쟁 강간이 더 규모가 크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회고도 여성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이렇게 단순하게 척도화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잔학상의 실재를 숨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보스니아 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공식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표명했다. 세르비아 군인에 의해 보스니아 강간 캠프에서 대규모의 강간을 당한 보스니아 피해 여성들은 보스니아 정부가 서구의 군사 개입을 설득, 유인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다.

보스니아가 전쟁 강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덕분에, 희생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사회의 문제로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불명예로 묘사한다. 여성들은 침묵의 벽 뒤에 숨게 되고, 공적인 수치심으로부터 그들의 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마지못해 얘기한다.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득신 여성이나 기혼 여성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의식이나 결혼의 신성함 등에 대해 자주롭고 그들을 부끄러워할 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혼한 여성들도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은 후로는 자기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한 수치심은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평화시에도 너무 섹스를 밟힌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젊은 여성들은 그들의 섹슈얼리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을 불명 예스럽게 한다고 여겨졌다. 명예와 수치심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교 등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고 일단, 여성 개인의 몸에 (남성의

성기가) 관통이 되면, 그녀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손상을 입게 된다.

수많은 증언을 통해, 일부 여성들은 그들이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수치심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을 딴 대로 돌렸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이 “월경혈”은 세르비아 병사가 강간하는데 방해를 이 되는 예로서 증명된다. 몇몇 증언들을 들어보면 여성들은 잡히거나 강간당할 때, “생리증이라 안돼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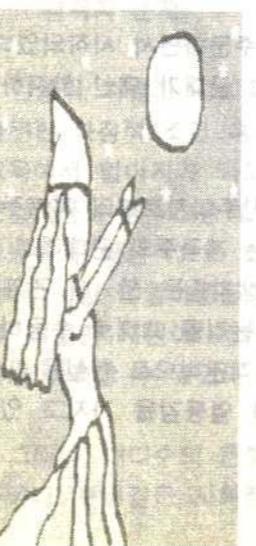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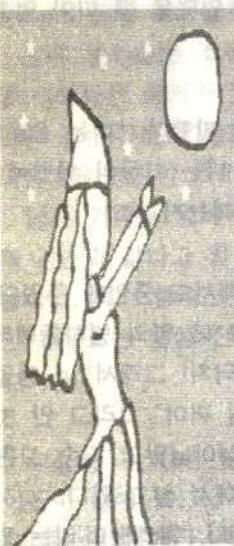
그러나 강간에 의한 임신은 인종 정체성의 결정적 위기를 나타낸다. 강간당한 여성은 강간으로 인해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Chetniks(세르비아 극단론자)로 표현한다. 많은 이들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증오 때문에 그 아이를 상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임신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초래한다. 크로아티아의 카톨릭 교회, Cardinal Kuharic의 지도자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반면, 이집트 출신의 회교 지도자는 보스니아 회교도 공직자들에게 임신 4개월 후에 낙태하는 종교적 법령을 통과시킬 것을 재촉했다.

평화시와 전쟁시, 두 시기 모두 여성들의 몸은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를 이동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명예를 상징적 저장소(용기)이며, 남성 경쟁의 상징적인 영역이다. 그들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다른 남성 집단의 여성들의 몸을 침범(강간, 납치) 함으로서 남성성을 경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 개인의 몸은 혈통(가계)의 축소판이다. 이 혈통 그 자체는 하나의 몸으로 인식된다. 그것의 약점은 몸의 구멍이라는 데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을 전체 혈통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여성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명예 콤플렉스 근저에는 다른 집단의 남성이 자신의 여성을 임신시킬 것에 대한 공포와 그 결과 “이방인”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러한 혈통 경쟁 속에서는 지속적인 피해 혈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은 강간하고 세르비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이 명예 콤플렉스의 아래 놓여있는 무의식적 공포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군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은 공포가, 실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다.

대체로 혈통의 개념은 인종주의로 확대된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크로아티아인들은 세르비아, 회교도 혈통에 대항하여 하나의 혈통이 되어간다. 이러한 혈통의 상징적인 몸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가 된다. 인종 청소는 그들이 국가 영토를 “처녀지”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침략의 강간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범되고 강간당하고 임신되는 집단으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지속된다. 개개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더 큰 영토에 대한 침략 행위의 축소판이다.

전쟁 무기로서 강간이 사용되는 것은 일탈이 아니다. 평화시의 (일상)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전쟁시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지역(로컬)에서의 전쟁 강간의 기원과 성적인 고문의 독특한 등기는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저질려지든, 개인 병사에 의해 저질려지든 변명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 성적인 고문은 (고문으로 인해 이미) 파괴되고, 극도의 분노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모든 전쟁과 대학살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정치적 환타지에서 나온 집단적인 행위에서 구축되어진다. 이러한 비극은 실제로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개인적인 것이고, 그들의 삶은 분열되고 (찢겨지고) 파괴되는 고통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인 환상으로 은폐된다.





2002 여름 기지촌 활동

한국 기지촌의 혼혈인 실태와 해결 방안

새움터
1. 서론

흔혈인(Mixed-Blood)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다른 두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이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두 민족의 구성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흔혈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언급해서는 안된다.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하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 역시 그 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방이후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흔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문제는 이후에 따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앞으로 이 글에서 흔혈인에 대한 정의를 미군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Amerasian'으로 사용하겠다.

최근에는, 기지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일본 등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관련 단체들이 연대를 통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역사적·구조적 배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흔혈인 문제는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물러나자 그 자리를 해방군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군대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반(半)식민지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나누어진다. 남한을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주는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한국을 점령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쟁기는 제국주의 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한·미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였거나, 감정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대학생이나 지식인조차 미국인에 대한 근거없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천년을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에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또한, 미국의 자본에 의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룬 한국에서 미국(인)에 대한 환상 역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환상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절대 권력의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면에는 민족적 자존심을 배경으로 하는 의도적이고 감정적인 우월감 역시 내면화되어 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이런 배타적인 우월감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바로 혼혈인이다. 순수 혈통이라는 민족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존재로서 혼혈인은, 민족 구성원으로 수용되기보다는 격리시키고 소외시켜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외국의 남성, 특히 평소 극단적인 권리 차이로 인해 한국의 남성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미군에 의해 손상된 한국(여성)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읽혀지면서, 혼혈인은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부계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제와 수천년을 순수 혈통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혼혈인을 한국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기지촌을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혼혈인의 어머니가 대부분 기지촌 매춘 여성이라는 사실이 이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3. 실태 및 문제점

현재 한국에는 약 1,000여명의 혼혈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에 50여년 동안 태어난 혼혈인의 수는 훨씬 많지만,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입양되고 현재 남아있는 혼혈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혼혈인의 문제는 단순히 양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인종적 배타성과 미 제국주의의 악영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혼혈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혼혈인의 대부분이 미군 기지 인근의 기지촌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역시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

1) 경제적 문제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소외의 결과로, 대다수의 혼혈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불우한 가정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성격적 문제와 자아 정체성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곤 한다. (통계에 의하면 혼혈아동의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전체 평균의 7배에 달한다.) 이러한 혼혈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그들에게 태생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외부적 조건으로부터 강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혼혈아동들이 지능이나 기타 신체적 능력에서도 평균적으로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혼혈인이 한국 내에서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연예 계통이나 단순 기능직이 전부이다.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이 혼혈인들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혼혈인들이 특정 직업으로만 진출하고 경제적 하위 계층에 머물게 됨에 따라, 사회적 편견은 더욱 강화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몇 년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혼혈인 중에서 80% 이상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조사 결과가 현 시점에서는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과 비례하여 그만큼 혼혈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혼혈인의 수가 즐어들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금마저 끊기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문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혼혈인은 기지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기지촌을 택한 이유도 있지만, 많은 혼혈인들의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매춘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녀 역시 기지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혼혈인 여성들이 다시 기지촌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사례들도 목격할 수 있었다.

기지촌에 만연한 군사 문화, 향락 문화가 혼혈아동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리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약 70% 가량의 혼혈아동이 기지촌의 모자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및 학교에서 많은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혼혈아동의 어머니 대부분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매월 50만원 이상 소요되는 학비는 어머니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어머니들이 기지촌의 성매매 산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학교가 아직 한국에서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혈아동들이 다른 정규 교육기관으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교의 교육이 혼혈아동의 정체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미국으로의 이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혼혈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단지 아버지가 미군이며, 어머니가 매춘을 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혈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다. 혼혈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역과 학교에서 당하게 되는 이러한 차별은 혼혈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며, 그 결과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3) 심리적 문제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적으로 다른 한국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서구적인 외모로 인해 자신을 미국인으로 규정짓는 사회적 시선은 어린 시절부

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게 한다. 또한 자신을 같은 민족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혼혈인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 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혼혈인이 기회가 된다면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단지 10%만이 한국에 남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인도 아닌,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상황에서 혼혈인들이 택할 수 있는 지점은 별로 많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혼혈인 스스로 어느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사회적 부적응은 혼혈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4. 대안

현재 한국에는 새움터를 비롯하여 멀벽재단, 혼혈인선교센타 등 몇몇 민간단체에서 혼혈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단체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연대의 지점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시혜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미국으로의 이주가 혼혈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혼혈인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인종적 편견과 배타성이 없어지겠는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역시 모두 외국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말인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배타적인 혈통주의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지촌 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혼혈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군의 한국 주둔이 기지촌과 혼혈인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미군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대다수의 미군이 자신의 자녀를 한국에 남겨놓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혼혈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피부색이나 성별, 종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혼혈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고, 균등한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혼혈인의 문제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계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국가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일본과 필리핀 역시 미군 주둔에 따른 혼혈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면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각 국가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과 연대를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2 여름 기획총 활동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해설

이 찬진 변호사

1. 법안 작성 경과

가. 2001. 4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 하에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모임들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모임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2001. 4. 말경부터 2001. 10. 초경에 이르기 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법률안 작성 실무 작업이 이루어진 끝에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문 초안들은 7-8회에 걸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향후 국회에서의 제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법률안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모임 과정을 들이켜 보면, 발제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가정폭력관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당시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하에 쟁점 항목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입법운동'과 관련한 여성운동 부문에 모범적인 또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 역시 큰 의미를 들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배경

(1) 국제조약의 근거 : 지난 1950년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법', 1979년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그리고 '1995년 채택된 '북경여성선언문과 그 행동강령'에 따르면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각국은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적 착취 금지를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관련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은 매춘여성의 규제와 단속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유인·유괴하거나 합의여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체 입법의 주된 관심사는 "인권"과 "성매매 매개체 기타 전달체계의 퇴출" 그리고 "성을 파는 자의 사회복귀"에 두게 되었다.

2. 법개정 방향

가. '윤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윤방법이 현실적인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윤락행위"를 공급하는 전 사회적인 다양한 매개체들의 확산 방지 및 축소를 위한 메커니즘이 현행 '윤방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 특히, 윤방법이 상정하는 성매매가 이른바 '전통형 성매매'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윤락산업구조'는 '윤방법'이 상정하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 '산업형 성매매',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로까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과 '성매매 확산방지'를 위하여는 단순한 형사처벌 중심의 법제보다는 "매개체 차단"을 중심으로 한 법 운용이 절실히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인 법개정 방향

(1) 법은 '윤락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의 금지주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다만, 전통형 매춘여성들의 포주 등 알선 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성을 감안하여 '자발적 매춘'의 범주를 최소화하고 매춘여성의 상당한 비율을 "성매매된 자"로서 형사적으로 면책되도록 하였고, '자발적 매춘'의 경우에도 형사 면책의 폭을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결국, 법의 입법목적의 가장 큰 축은 '성매매 관련 일체의 매개체차단 및 퇴출'에 두었고, 현행 윤방법 시스템하에서 매개체의 책임이 다양한 양이 사슬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을 포함한 관계 종업원, 기타의 자들이 매개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형사 면책조항 등을 둘으로써 직업 또는 영업으로서의 매개체, 매개업소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언제나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 운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그들이 얻은 수입은 불법수입으로서 '물수, 주장'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일단 매개체가 노출될 경우 경제적으로 불법수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이를 결정적인 제보를 한 자에게 상당 부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현재와 같은 은밀한 수직적 억이사슬의 구조를 봉괴시키고자 하고,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윤락산업'을 경제적으로 퇴출되도록 하였다.

(3) 성을 파는 자의 매개체에 종속된 성매매 여성들을 포함한 관계 종업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안의 주요 기조

(1) 이 법의 명칭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법의 명칭에서 확인되듯이 이 법은 성매매알선범죄의처벌및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2)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조)

(3) 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 및 구금·협박·위계·선불금 기타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자의 성매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제2조 제3호 “성매매된 자”정의 규정, 제10조 제1항 참조)

(4) 또한, 형사 사건 진행시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비범죄인 ‘성매매된 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받는 본인이 ‘성매매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시 신뢰관계있는 자를 등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설과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법률상 포주 기타 법률상, 사실상 사용자 관계에 있는 자 등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직, 간접 관련된 채무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하도록 강제하여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사기 등 “재산범죄 피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고(법제10조), 심리를 비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심리 및 수사시 신뢰관계있는 자가 등석할 수 있도록 하여(법제 8,9조) 성매매행위자라는 심리적 ‘낙인’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법률상의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5) 기타의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1항 제2호)

(6) “성을 사고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였다.(법제14조 제5항, 제23조, 제48조)

(7)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파는 자”的 사회복귀를 돋기 위하여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제64,65,66조)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등 관련법령에 따른 수급권을 보장하고(법 제72조) 이와 관련된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등기간 중의 무료숙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시설을 가기보다 감옥을 원했던 만큼 여성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시설을 바꾸어 오히려 여성들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사회복귀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제65조)

(8)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체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제15조)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물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제16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9) 이 법은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제3조 제6호, 제5조)

(10) 이 법은 고소, 고발 및 신고자(일종의 내부비리고발자가 될 것임)들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을 적용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 진술, 증언하는 자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두었다.(법제80조)

또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해 신고자와 그 친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제18조)

(11) 이 법은 기존 윤락행위방지법 제20조를 대폭 보완하여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 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 및 약정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성매매된 자에게 갖는 각종 채권 역시 무효로 하였으며 무효인 채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원은 무효로 하였다. (법 제22조 1,2,3항)

(12) 성매매 행위의 장소, 알선등 행위의 장소는 강제적인 시설폐쇄를, 기타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자를 관리하는 숙소, 기타 이와 관련된 직업소개소 등 알선등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시설은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하였고,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없앴다.(제21조)

(13) 성매매 관련 사건의 고소, 고발, 신고자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청신청권을 보장하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당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제20조)

4. 용어 변경 관련

현행 윤방법상의 ‘윤락행위’, ‘그 상대방’ 대신에 ‘성매매행위’, ‘성을 사는 행위’, ‘성을 파는 행위’로 개념을 변경하였다.

5. 총 평(= “성매매” 매개체의 퇴출 제도화)

본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매개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킴으로써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그 제도적인 수단으로는 알선등 행위로 인한 일체의 수익을 불법수익으로 간주하여 이를 몰수, 추징토록 하였으며, “성을 파는 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은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토록 하여 사업장으로서의 “성매매 업소”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알선 등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신고자에게는 각종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보상금 지급, 사회복귀프로그램 제공 및 그 기간 중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내부비리”가 사회적으로 노출되도록 강력하게 유인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수단은 모두 각기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2002 여름 기획 출판 활동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전문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을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한다.

1) 성교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행위자"라 함은 전호의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성매매된 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한 행위로 인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²¹⁾

가. 인신매매, 감금, 강간, 폭행

나. 심각한 상해나 육체적, 장소적 구금에 관한 협박 기타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거부하기 어렵게 하는 일체의 행위

다. 자신을 고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의하여 중독 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

4. 제3호 가항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을 파는 행위, 알선 등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 행위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 사람을 모집, 운반, 이동, 은닉, 인도 또는 인수 및 전매하는 일체의 행위(국가간의 이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함은 성매매행위를 매개, 주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 자신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하는 것, 수입을 목적으로 기타의 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여 나체공연 등 일체의 성적인 음란행위를 제공함과 아울러 성을 파는 행위자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것 및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자금 또는 부동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설 등 이용자"라 함은 성매매된자, 성매매행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63조에서 정한 시설

21)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대상청소년'의 개념을 축소해석하여 성매매 행위를 많이 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윤방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념임.

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수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3조, 제15조에서 정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불법수익은 슬값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총 수령금액으로 한다.

9.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의 방지와 성매매된 자의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행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홍보
2. 성매매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운영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제공
3.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4. 성매매행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5. 성매매행위 예방을 위한 각급 학교기관, 군에서의 교육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관계법령과 법 집행에 대한 직무교육
6.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강요행위
2.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는 행위
3. 성매매 행위의 장소나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성매매 행위를 한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공급 또는 소개하는 행위
6.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대한 광고행위
7. 성매매행위

제5조(국제적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 법무부, 여성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관기관은 국제적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자중 타인의 여권을 소지한 자 기타 외국인여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인지 여부의 확인 및 범죄수사의 개시
2. 국제적 성매매 범죄의 경로와 범죄 조직, 범죄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조사
3.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의 여권을 소지하는 업주나 중개인 기타 알선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그 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제2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또는 그 장은 시설이용자 등으로부터 알게 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 이를 수사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기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수사, 재판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장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 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성매매 행위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8조(심리 시 증인 등의 비공개) ①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 행위자로서 자수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중 자수한 자 또는 고발자를 심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 받은 제1항 각 호의 해당자들과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등석) ①법원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자들이 지정하는 자를 등석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자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등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이 정한 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전문상담원들을 소개하여 동인들 중 1인을 등석시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위 각 항의 해당자가 장애인, 외국인, 아동인 경우에는 동인들이 지정하는 자를 반드시 등석시켜야 한다.

제10조(사법경찰관의 의무사항) ①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조사시 '성매매된 자'의 개념과 '성매매된 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등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 동인이 출석하기 전에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및 시설 무료 이용 및 여성복지상담소 이용 등 권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이 법이 정한 여성복지상담소 또는 긴급보호시설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조사 전에 반드시 이 법 제22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위 행위자의 재산범죄에 관한 수사 시에는 해당 행위와 관련한 재산권 피해 내역이 제22조에 관련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여성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수하거나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수사 및 형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당 외국인여성이 수사절차의 참고인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당해 심급절차에서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6장 제3절 소정의 보호명령, 같은 장 제5절 강제퇴거명령의 각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류기간 중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복지시설의 이용 등 내국인 성매매된 자가 보장받는 수준의 보장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여성에게 금전급부의 불이행 등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항의 경우 이를 준용하고, 기타 배상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장애인, 외국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타인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자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불임시술을 하게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인신매매를 한 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자신이 고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알선영업행위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

2.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자

3.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하리라는 정을 알고서 영업으로 제1,2호의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 또는 소개하거나 제1,2호의 업주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자

4. 영업으로 제3호의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등 관리하는 자 및 자신이 공급, 소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의 계약 등을 대리한 자로서 제3호 소정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소개한 후 이를 사후에 관리하는 자

5. 제1,2,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공한 자

②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특정한 장소에서 구금 또는 감시하는 자 및 이를 목적으로 건축을 등에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 카메라 등 자유로운 출입을 어렵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단,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제외한다.)

2.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④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한 자중 고용인 및 성을 판 본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한다.

제14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성을 사는 자가 성매매행위와 관련하여 통화상 기타 영상물의 제작을 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을 파는 자가 장애인인 정을 알고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자가 성을 파는 자로 하여금 위계, 위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투입하게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관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이

하 '법원'이라고 한다.)에 '보호사건'으로 이를 송치할 수 있다.

⑥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매매행위'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성매매 관련 사건의 피의자 등의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광고행위의 금지 등) ①성을 파는 행위, 제13조 제4항에 정한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를 할 자를 소개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성매매알선 등 관련 업소의 종업원 모집공고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 광고행위(각종 간행물 및 유인물,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자 또는 직접 모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되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3,4항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이를 게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3항의 광고물 및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몰수·추징) ①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얻은 "불법수익 등"은 이를 몰수한다.

②전항의 "불법수익 등"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면제한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단, 이 법에서 정한 사건의 초범의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각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수자 또는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로서 초범이 아닌 자

2. 제14조를 위반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서 자수자 및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자

③수사기관은 성매매된 자 및 제1, 2항 규정에 의하여 면책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 된다는 점을 구두로 경고하고 문서상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성매매된 자에 대하여는 성매매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한 선불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위약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채무와 관련하여는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타 법률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준용) ①이 법 제12조, 제13조에 관한 범죄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특정범죄로 본다.

②이 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신고자(자수자를 포함한다.) 및 그 친족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19조(보상금) ①법 제12조, 제13조에 대한 범죄신고(자수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고, 불법수익 등이 몰수, 추징되었을 경우에는 몰수, 추징된 금원 중 3%이상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자수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정신청) ①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대하여 고소, 고발 또는 신고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261조 내지 제265조는 위 재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행정처분) ①관할 시, 군, 구청장은 영업으로 성매매 행위의 장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기타 제12조, 13조, 제1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제1,2항의 범죄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쇄명령을 받은 자 및 그 소유자는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사 업소를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할 수 없다.

제22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 행위와 관련한 업소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성매매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고용한 자가 성매매된 자 기타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약정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 지급한 금전 기타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성매매된 자에 대하여 인신매매자 기타 알선 등 행위자가 성매매된 자 본인의 채무를 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서 지급 받은 금원은 성매매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처분

제 1 절 통 칙

제23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제14조에 정한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4조(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14조제5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송치서) ①제14조 제5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직업·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를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송) ①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당해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로부터 시효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건에 대한 제 45조 제1항의 불처분의 결정(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결정에 한한다)이 확정된 때 또는 제37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제2절 조사·심리

제2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매매 행위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사건 조사관) ①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보호사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관의 자격·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조사명령) 판사는 조사관에게 행위자의 심문이나 성매매행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전문가의 의견조회) ①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성매매 행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조사관은 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행위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성매매 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성매매 행위자의 성명·생년월일·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매매 행위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성매매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인) ①성매매 행위자는 자신의 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변호사, 성매매 행위자의 법정대리인·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원은 성매매 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그 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성매매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선임 청구권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심리기일의 지정) ①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성매매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 또는 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행위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심리의 비공개) 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①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검증·압수·수색) ①법원은 검증·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협조·원조) ①법원은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기타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불처분의 결정) ①판사는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법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행위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처분의 기간등)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행정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7조(위임규정) 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48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에의 성매매행위자의 출입 및 연락금지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수강명령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4. 이 법이 정하는 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5.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 성매매행위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 위반시의 제재사항과 재범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8조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항 제2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①법원은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호처분의 집행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위반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51조(보고와 의견제출 등) 법원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성매매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2조(보호처분의 변경) ①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8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기간은 6개월을, 동항 제2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처분변경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제48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고정되어 정상적인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및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55조(비용의 부담) ①제4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의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성매매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항고와 재항고

제56조(항고) ①제48조의 보호처분, 제52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53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성매매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7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 받은 법원은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9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63조(시설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및 제2장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집행을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및 도별로 제64조에서 정한 각 시설을 1개 이상씩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고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의 명칭,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시설의 종류)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긴급보호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의 선택에 따른 15일 미만의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소자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기 또는 자립지원시설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지원시설 :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았거나 파는 자중 자립자활이나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 심신안정, 신변보호,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동기간 중의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청소년 시설 : 성매매된 자중 청소년으로서 친권자 기타 보호의무자로부터 사실상 양육받지 못하는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교육법상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자립자활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 취업 등 정보 제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청소년을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일반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제65조(시설의 업무) ① 긴급보호시설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숙식의 제공
2. 개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4. 신변보호
5.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관련 지원

② 자립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립자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시와 취업정보서비스 연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3. 기술교육(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포함)
4. 자녀 등반시의 보육 지원 및 필요시 모자복지법상의 모자자립시설에의 연계 지원
5.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 제1,2항의 시설은 법제48조 제1항 제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상담업무를 병행 실시한다.

제66조(시설 사용 자격 등) ①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는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입소에 관계없이 당해 시설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의 자중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상담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시설이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 및 이용 중단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단체 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조치 또는 이용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제64조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20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 정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된 자 기타 성을 팔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소의 상담원은 상담 관련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운영기준, 종사자(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인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방문 상담서비스
2. 이용자에 대한 시설이용권 고지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시설 이용 연계
3. 이용자에 대한 위기 상담
4. 법률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제70조 (사법경찰관리의 지원)
사법경찰관리는 여성복지상담소의 현장방문상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동행하여야 한다.

제71조(의료기관 지정) ①시, 군, 구청장은 제64조에서 정한 시설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특례) ①성매매된 자 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분이 면제된 자중 시설이 이용기간 중 등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②위 항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 생계급여는 당해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시설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지급한다.

③시설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은 즉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중단한다.

④기타 위 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단,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3,6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64조의 시설 및 제68조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 일시 등을 시설 및 상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3조 또는 제68조에 의해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시설이 아니면 여성복지상담소, 긴급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7조(시설의 폐쇄 등) ①시·도지사는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을 침해하거나 이용권을 박탈, 제한하는 경우 및 부정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 받게 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3. 제7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76조를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종류와 기준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80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자기 또는 타인의 이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4. 제76조를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2.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벌금형을 병과 한다.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2,3항,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77조 제1항 제2,3호를 위반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84조(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등에관한 특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행위와 관련하여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타당하다.)

제85조(기타 법률과의 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2 여름 기지촌 활동

기지촌 활동 수기

치오

기활이란 기지촌 활동의 악자로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센터인 '새움터'에 가서 1주일 동안 함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었던 언니들, 언니들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기활.

문을 열자, 생각보다 넓고 좁은, 조금은 초라한 것도 같은 공간이 있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난로. 벽 한 쪽에는 종이꽃들과 엽서가 진열되어 있는 선반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는 작업대가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부엌이 이어져 있었다. 새움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따라 난로 뒤편의 좁다란 계단을 올라가니 공부방 겸 사무실이 나왔다.

주의 사항. 예의바를 것,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피할 것, 언니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쓸 것, 피부색이나 외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말 것 등등. 언니들과 아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거다.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폭력이고 상처일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난로 가에 둘러앉았다. 아직 낯설었지만, 묘하게 친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벽에는, 전에 기활을 다녀간 학생들이 쓴 자보들이 붙어 있었다. 별명과 자기소개, 언니들의 캐리커처, 그리고 기활을 마치는 아쉬움을 담은 인사말. 곧 언니들이 하나 둘, 출근하시기 시작했다.

그다지 해야 할 일은 없었다. 오전에는 점심을 만드는 일을 돋는 것이면 되었다. 식사를 하고 나선 설거지를 하고, 그 후엔, 두 명은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공부방 일을, 나머지 두 명은 언니들의 일을 돋는다. 나는 일 팀, 요즘에 하는 일은 엽서를 만드는 거다. 그것 역시 어려울 것은 없었다. 언니들에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병들이 많고 몸이 쇠약해있어서, 꽃이나 엽서, 악세서리를 만드는 등의 힘이 들지 않는 쉬운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 물론, 어떤 기술을 배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일도 할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이, 처음엔 오히려 더 힘들었다. 오전에는 난롯가에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엽서도 잘 팔리지 않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탓인지 일 자체가 느슨했다. 간간이 커피를 훑적이며 언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다. 농활을 갔을 때처럼,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이 계속 주어져서 그것들을 땀흘려 해내고 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동안 어색했고 당혹스러웠다.

바로 그게 기활의 가장 큰 특징일거다. '일상의 공유'. 언니들 곁에 앉아 있는 것, 함께 차를 마시는 것, 한 솥에서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우스운 대목에선 함께 웃는 것...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을 함께 하면서 언니들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말이다. 기활을 오기



전까지, 언니들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는 존재들이었다. 기지촌, 살인 사건이라도 나면 TV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무서운 곳,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곳, 내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나와는 상관없는 곳. 하지만 이 곳에 와서 마주 대던 '그 사람들'은 그저 푸근하고 맘좋은 이웃집 아줌마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많이 먹으라고 밥이며 국이며 가득가득 퍼주시고, 반찬이 맛있다는 말에 으쓱해하시고, 우리가 설거지할 때면 잘하나 못하나 불안하게 지켜보시고. 어제 TV엔 누가 나오더라, 어제 무얼 했다, 어느 가게가 더 싸더라 하는 이야기들.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름없는' 삶, 일상이 있는 거다.

그러다가, 군산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막 기활에 좀 익숙해지던 참인 수요일, 선생님은 사무실로 우리를 부르셨다. 군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혹시 며칠 내려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모두들 가고 싶어했지만, 지방까지 가야하는 부담에다 딱히 며칠이 걸릴지도 불확실한 일이라서, 마침 사정이 괜찮던 나만이 내려가게 되었다. 급해서 오늘 당장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아이들과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고작 사흘뿐이었는데도 어느새 정이 들어버렸는지, 차마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별것 아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상일 뿐이었는데, 그 별것 아닌 순간순간들이 너무 또렷하게 맷혀 와서, 그 별것 아닌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같이 보내고 싶어서,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다. 인사를 하고서도 선뜻 문을 나서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내게, 언니들은 어서 가라고 타박을 했다. 항상 무뚝뚝한 척만 하던 한 언니는 내내 엽서 만드는 데만 열중하며,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많이 웃고 항상 내게 말을 걸어주어 고맙던 언니는, 일찍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나를 끌끄러미 바라보더니,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을 땐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 않았다. 날 바라보던 그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앞이 흐렸다.

군산에서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여성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유가족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리고 있었다. 시청도 경찰서도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항의하고 싸우고 바깥에 진상을 알려내어야 했다. 나는 같이 내려간 새움터 선생님을 따라 다니면서 잔일을 도왔다. 화재 사건의 전모와 처리 과정을 보도한 뉴스와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관계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한 것을 기록으로 옮기는 일 같은 것도 해야 했지만, 가장 주된 것은 유가족분들을 듣는 것이었다.

연락을 받고 온 유가족들은, 처음에는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못하셨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 언니, 여동생이 낯선 곳에서 죽어있으니, 그저 아연할 수밖에. 분향을 하고, 시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혼란스러워 하셨다. 왜 제주도에 살던 딸이 군산에 와서 죽어있는지, 돈을 벌어오겠다던 동생이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건지, 왜 그 동안 연락은 없었던 건지. 자

초지종을 듣고, 이게 현실임을 몇 번이고 곱씹고 나서야, 비로소 오열하셨다.

새움터 선생님들은 식사 때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식사하시라고 챙겨드리고, 숙소에 이불은 부족하지 않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를 물으셨다. 그리고 슬픔에 겨워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을 흘리며 가슴아파하셨다. 하지만 눈가가 짓무를 만큼 읊음에 지친 유가족들을 보면서도,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함께 읊수도, 공감할 수도. 무언가가 가슴에 걸려서 그냥 먹먹할 뿐이었다. 돌아가신 언니들의 영정 앞에서도, 유가족들 앞에서도, 어쩐지 나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어버리고픈, 도망쳐버리고픈 충동을 끊임없이 억눌려야 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새까맣게 타버린 벽... 두 사람이 지나기도 빠듯한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죽어져 있었다. 매캐한 냄새, 복도 끝에는 계단이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올라갈 수 있을 너비의 좁은 계단, 바로 거기에서 12명이 차곡차곡 시신으로 쌓여갔던 거다. 계단 중간쯤엔, 창문이 있었다. 합판이 뜯박혀 있고 그 위엔 벽지가 발라져 있어서, 도끼로 부수고 나서야 창문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창문. 그리고 계단 끝에는 그 '특수키'가 설치된 철문이 있었다. 철문을 지나면 2층이다. 여기에도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어느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방들이었다. 문의 손잡이가 모두 반대로 달려있어서, 밖에서 눌러 잠그면 안에서는 열지 못한다는 점만 빼고. 어떤 방에는 옷가지와 물건들이 가득했다. 언니들이 입던 옷, 쓰던 화장품, 이불, 베개... 아직도 삶의 흔적이 선명한, 언니들의 유물이었다. 경찰의 조사가 있었던 듯 어지럽혀진 물건들 사이에, 문득 뭔가 반짝거리는 알갱이들이 눈에 띠어 고개를 숙여보니, 그건 종이학이었다. 수천 마리가 넘는 종이학들이, 방 한구석에 쏟아져 뒹굴고 있었다...

군산에서의 마지막 날, 화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성매매 근절 요구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장례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냥, 무언가 마음에 걸려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 어쩌면 군산에 있던 내내 날 짓눌렀던 괴리감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는 듯했지만 그냥 '나의 일상'에 침잠해버리며 잊어버렸다. 그러다 며칠 후에,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를 기웃거리다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다. 장례식 이야기였다. 군산에서 열린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그녀들의 관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그 때, 뒤늦게 읊음을 터져 나왔다. 군산에 있던 내내, 그토록 슬픔에 잠겨있던 유족들을 보면서도, 언니들의 체취가 남아있던 사고 현장을 들려보면서도,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던 눈물이 그제서야 쏟아져 나왔다.

그 동안, 머리로는 언니들과 나는 다를 게 없어, 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선 항상 언니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었던 거다. 때늦은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들과 나 사이에 내가 쌓아놓은,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던 그 벽이 비로소 조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지 않았던 것, 언니들을 떠나보내던 그 때 그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후회했다. 어째서 그것이, 내가 갈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저



지나쳐도 괜찮을 타인의 일이라 생각했는지...그건 나의 죽음이기도 했는데, 나의 장례식이기도 했는데, 죽은 것이 내가 아니라 그녀들이어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언니들이 그곳에 있어야 했던 것은 단지 언니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일 뿐인데, 나와 마찬가지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없이 속삭이면서, 정말로, 정말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화재가 난 업소 주변에는, 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문을 걸어 잠근 유리벽의 가게들이 즐비했다. 사건 이후로, 다들 어딘 가로 떠났다고 한다. 그 어딘가에는, 낮이면 커튼을 치고 밤이면 붉은 등을 켜는, '허가 받은' 주점들이 새로 들어섰을 것이다. 그곳에서 지금도, 모든 것은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은 인간이 아닌 사회에서 살고 있다. 여성들은 그냥 살덩어리, 남성의 성욕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다. 그건 '어떤'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하며 그들에게만 희생양의 낙인을 찍고 싶은가? 짓밟아도 될, 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당신을 정당화하고 싶은가? 혹은 분리시키고 싶은가? 낙인의 조건은 '여성'일 뿐이며, '어떤'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폭력은, '여성'인 '모든' 이에게 행해지는 폭력이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성은 없다.